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23. 1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세 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단위
-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
- **수급자** : 이 사업안내서에서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지칭
-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자(세대 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만이 대상자(행복이음 시스템상에 대상자로 지정되는 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표상의 세대원(친족), 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음
 - * 단, 서식(신청서 양식 등) 상의 '신청인'은 바우처를 발급받는 대상자 본인을 뜻함
- **기존('22년) 대상자** : 2022년도('22.7~'23.4월까지 사용)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은 대상자
- **기존('22년) 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 : 기존('22년) 대상자였으나, '23년도 신청 기준일 현재('23.5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격 상실,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등 2023년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세대)
 - * 단, 제외된 대상자가 '23년도 신청기간 내 '23년도 신청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자동 중지자** :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대상자가 전출입 또는 사망했을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자동 중지자로 표기됨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 **발행 고지서** : 세대별로 발행되는 에너지사용요금 고지서(전기·도시가스 등)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로, 발행일이 고지서에 표기됨
-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4만 5천원)를 하절기에 당겨 쓰기 가능('22년도 신규 도입)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사항 신규 대비표

구 분	2022년	2023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동일) -----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노인(1958.12.31. -----) • 영유아(2017.01.01. -----) • (동일) • ---- • ----- • ----- • -----
지원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장기입원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등유나눔카드 수급자 - 연탄쿠폰 수급자 - '22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청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삭제) ○(동일) ----- - ----- - ----- - '23년 10월 이후 -----
지원금액	○1인 세대 : 277,800원 (하절기 29,600원, 동절기 248,200원) ○2인 세대 : 379,000원 (하절기 44,200원, 동절기 334,800원) ○3인 세대 : 510,900원 (하절기 65,500원, 동절기 445,400원) ○4인 이상 세대 : 677,100원 (하절기 93,500원, 동절기 583,600원) *'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	○1인 세대 : 279,500원 (하절기 31,300, 동절기 248,200원) ○2인 세대 : 381,800원 (하절기 46,400원, 동절기 335,400원) ○3인 세대 : 522,600원 (하절기 66,700원, 동절기 455,9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하절기 95,200원, 동절기 597,500원)
하절기 당겨쓰기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 (자동신청자) 희망 세대는 '22년 6월 28일까지 변경 신청 - (신규신청자) 희망 세대는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시 선택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바우처 일부(4만 5천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 (적용신청) 희망 세대는 '23년 9월 30일까지 신청 - (해제신청) 희망 세대는 '23년 6월 27일까지 변경 신청

구 분	2022년	2023년
신청, 재신청기간	○신청기간 : '22.5.25.~'23.2.28. ○재(변경)신청기간 - 세대원수,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 '22.5.25.~'22.6.28. * 단, 동절기에너지원, 대상자, 이용권 등의 변경 재신청은 '23년 4월말까지 가능	○신청기간 : '23.5.31.~'23.12.29. ○재(변경)신청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 '23.5.31.~'23.6.27. * 단,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 신청은 '23년 9월말까지, 세대원 증가, 에너지원, 대상자, 이용권 등의 변경 재신청은 '24년 4월말까지 가능
사용기간	○사용기간 : ①하절기 '22.7.1.~'22.9.30. - (가상카드) 전기공급사에서 7~9월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차감 ②동절기 '22.10.12.~'23.4.30. - (실물카드) 4월말까지 사용 - (가상카드) 공급사에서 10.12~4.30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차감	○(동일) : ①하절기 '23.7.1.~'23.9.30. - (동일) ----- ②동절기 '23.10.11.~'24.4.30. - (동일) ----- - (가상카드) 공급사에서 10.11.~4.30.에 -----
기존대상자 (‘21년 대상자) 신청	○기존(‘21년) 대상자 중 자동신청자 및 신규신청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22년도 지원내용 또는 신청 안내(지자체 협조) - (자동신청자) 자동신청결과 안내 및 신청정보 변경희망시 재신청 안내 - (신규신청 필요대상자) 주소, 세대원수 변경 등으로 신규신청 안내 ○(자동신청자) '21년신청정보와 동일*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21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 '21년 신청정보로 자동신청되며, 대상자가 신청정보 변경희망시 재신청(정보수정)을 하여야 함 ○(신규신청 필요 대상자) - '21년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충족하나, 세대원수 변동, 전출, 대상자 사망(2인이상세대) 등의 사유로 바우처가 중지되어 지원등급,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번호, 대상자 변경 등을 포함한 신규	○기존(‘22년) ----- · '23년도 ----- - (동일) ----- - (동일) ----- ○(자동신청자) '22년----- - ----- · '22년 ----- * '22년 ----- ○(신규신청 필요 대상자) - '22년 (동일)-----

구 분	2022년	2023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신청정보 수정 (재신청)	○ 자동신청자 또는 신규신청을 완료한 대상자가 기존 신청정보 (이용권,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 번호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정보 입력 오류 또는 행정실수 등의 경우 정보수정(재신청) -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기존신청건을 중지후(단,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의 경우 자동 중지후) 정보변경 재신청 ○ 대상자 사망(2인이상 세대에 한함)으로 자동중지된 경우, 대상자 변경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가능 ○ 가상카드 대상자의 전출입으로 자동중지된 경우, 에너지원 변경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가능	○(동일) ----- ----- ----- ----- ----- ----- - ----- ----- ----- ----- ○ (동일) ----- ----- ----- ○ (동일) ----- ----- -----
신청(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시 에너지 요금 고지서(영수증)	○(동일) ----- ○----- ○----- -----
실물카드 발급	○ 실물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국민 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동일) ----- ----- ----- ----- -----
전용카드	○ 체크·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였으나 신용문제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용카드 발급 ○ 직접 방문이나 전화문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상카드로 신청	○(동일) ----- ----- ----- ----- ○(동일) ----- -----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대상) 주거환경, 행정착오, 시스템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 신청, 발급,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신청기간 : '22.5월~7월 ○ 지급시기 : '22.7월~9월	○(동일)----- ----- ----- ----- ----- ○신청기간 : '23.5월~7월 ○지급시기 : '23.6월~8월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3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5

II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2

1. 에너지바우처 신청·결정·통지·사용안내 4
2. 대상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4 2
3. 기존(2022년) 대상자 정보 관리 72
4.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23

III 바우처 발급과 사용 34

1.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36
2. 에너지바우처 발급 39
3. 에너지바우처 사용 41
4. 에너지공급사 역할 44

IV 사후 관리 47

1. 기관별 역할 분담 49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50

V 예산집행 및 정산 53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5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7
3. 이의신청 처리 및 예외 지급(환급형바우처) 9 5

목 차

VI FAQ (자주 묻는 질문) 62

1. 신규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6
2. 재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6
3. 대상자 신청·사용 관리 체크리스트	8
4. 제도·지원기준 문의	70
5. 신청 관련 문의	76
6. 신청정보 변경 문의	85
7. 사용 관련 문의	90
8. 외국인 관련 문의	102

붙임1. 공통 서식	104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방법	4
붙임3.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사명 및 공급사 코드	221
붙임4. 에너지 공급사별 카드 납부방식 / 고객번호 확인 방법	421
붙임5. 에너지별 3단 비교표	135
붙임6.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범위	94
붙임7.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	8
붙임8.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가이드	2

I

사업 개요

1.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1.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1 바우처의 유형

* 출처 : 바우처연구(2002, 장광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연구(2009, 박광수)

-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수혜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수혜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자에게 구매권을 사용하면 정부가 공급자에게 결제액(지원액)을 지급하는 형식
- (묵시적 바우처) 물리적 증표 없이 이용자 및 관련자가 수혜권리가 있음을 인지 후 자유롭게 재화·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바우처가 대표적 사례

- (환급형 바우처) 수혜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 이후에 영수증이나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환급하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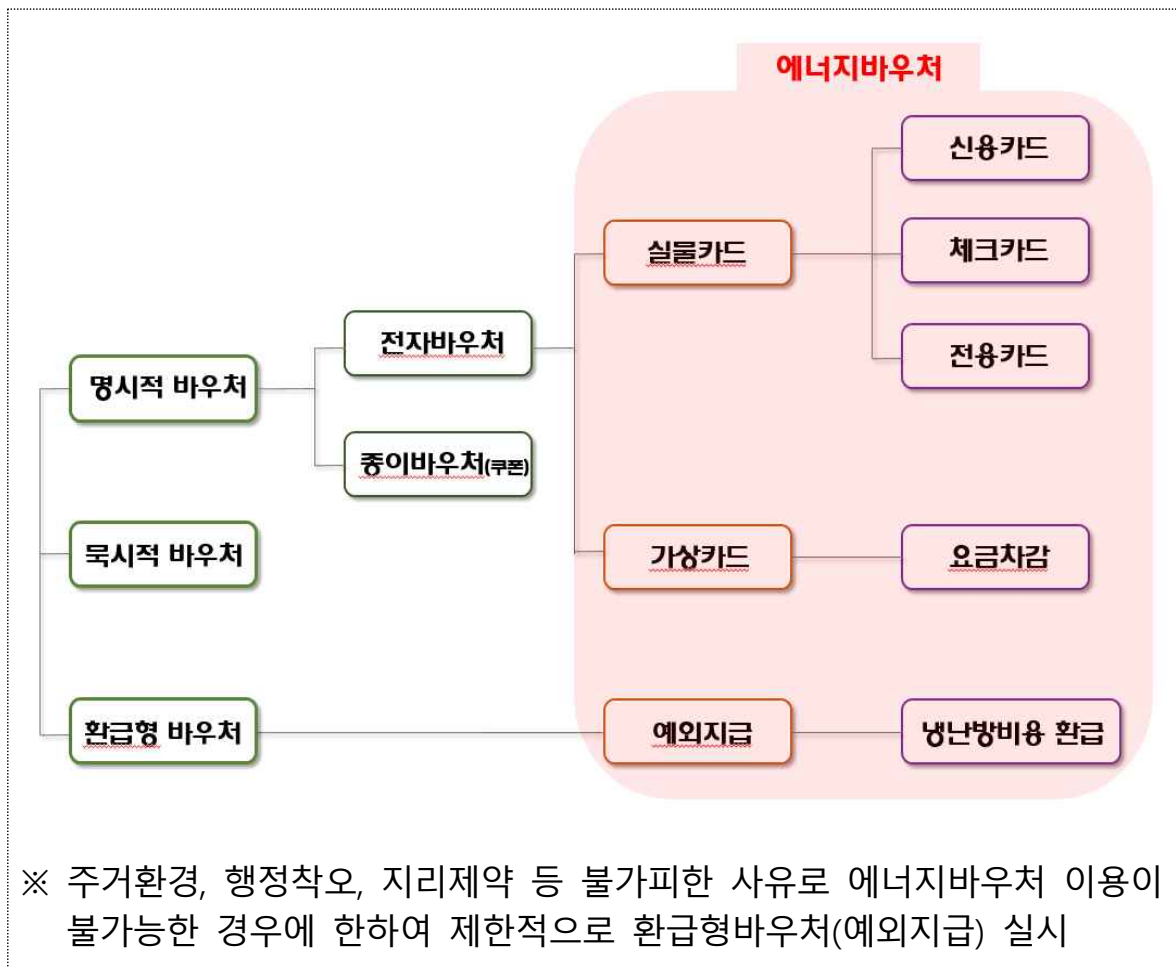
2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7의2)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
 -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에너지비용을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에너지비용을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대상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에너지바우처의 유형>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추진경과

- 18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13년 5월)
 -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43번과제)
 -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60번과제)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를 거쳐 사업 예산 반영 및 도입 확정('14.8월)
-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14.12~'15.6월)
-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확정('15.8월, 사회보장위원회)
- '1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5.11~'16.1월 , 사용 : '15.12~'16.3월)
- '1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6.11~'17.1월 , 사용 : '16.12~'17.4월)
- '17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7.10~'18.1월 , 사용 : '17.11~'18.5월)
- '18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8.10~'19.1월 , 사용 : '18.11~'19.5월)
- '19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9.5~'19.9월 , 사용 : '19.7~'20.4월)
- '20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5~'20.12월 , 사용 : '20.7~'21.4월)
- '21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1.5~'22.2월 , 사용 : '21.7~'22.4월)
- 20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22년 5월)
 -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2-4-21번과제)
- '22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2.5~'23.2월, 사용 : '22.7~'23.4월)
- '23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3.5~'23.12월, 사용 : '23.7~'24.4월)

2

예산규모 및 법적근거

- (예산) 1,665억원 (민간경상보조, '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비 기준)
 -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4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적용신청) '23년 9월 30일(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해제신청) '23년 6월 27일(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며,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필요)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5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7.1. ~ 9.30.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실물/가상카드 상세내용은 36p참조)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6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3. 5. 31. ~ '23. 12. 29.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3.5.31.~'23.12.29.
- * 세대원 감소 기한 : '23.5.31.~'23.6.27.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3.6.28. ~ '23.6.30., '23.10.4.~'23.10.6.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23.5.31. ~ '23.6.27.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5.31. ~ '23.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23.5.31. ~ '24.4.30.

○ (사용기간) '23. 7. 1. ~ '24. 4. 30.

- 하절기 : '23. 7. 1. ~ '23. 9. 30.
- 동절기 : '23. 10. 11. ~ '24. 4. 30.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7

신청 및 사용관련 시스템 안내

구 분	기 능
(신청단계) 행복이음 시스템	○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변경 ○ 에너지바우처 중지 등
(사용단계) 업무포털 시스템 (www.energyv.or.kr/workp)	○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통계 및 사용 현황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승인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

-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 기존('22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 관리(27p참조)

 - 행복이음 시스템상의 '22년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23년 자격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23년 지원여부 및 재신청(필요시) 안내 등을 실시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 대상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발급단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서 대상세대, 지원금액 정보를 국가바우처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하고, 바우처 발급 및 이용
 -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신청·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 (본인, 친족, 공무원)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담당공무원	▶ 세대원특성(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세대원수 확인 ▶ 에너지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 대상자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공무원	▶ 선정결과 통지(서면 또는 전자문서 발송) * 결정정보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전송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실물카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 가상카드 정보는 에너지공급사로 전달 * 관련 DATA는 한국에너지공단도 공유됨
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발급신청 가능
결제·차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에너지판매소 등에서 에너지비용 결제 * 가상카드는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재신청 등을 통한 정보관리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안내 ▶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담당공무원)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중지처리 후 국가바우처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비용 예탁 및 정산 ▶ 카드 사용 비용 청구 및 정산 등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 에너지바우처 신청 · 결정 · 통지 · 사용안내
2. 대상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3. 기존(2022년) 대상자 정보 관리
4.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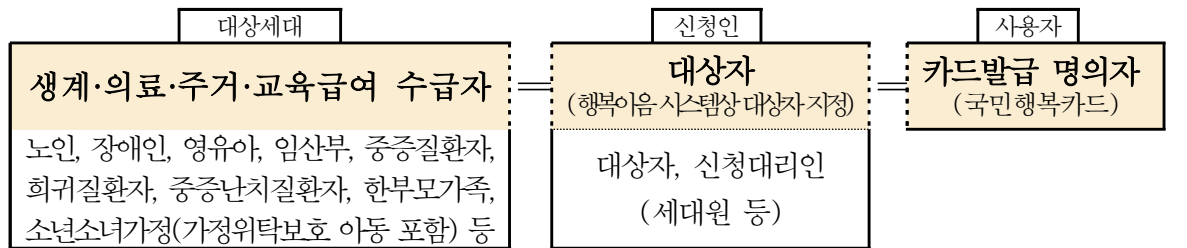
1. 에너지바우처 신청·결정·통지·사용안내

* 기존('22년) 대상자는 「3. 기존('22년)대상자 정보관리」(27p)에 따름

1

신청서 작성 전 용어정의

※ 대상자 관련 용어 정의(표)



○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존재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행복이음 시스템상의 '신청인' 항목에 입력되는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친족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란에 대상자명 기재 가능)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을 위해 대상자의 전기 고객번호 필수 입력

○ 동절기의 경우 해당 세대의 동절기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에 따라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도록 안내

* 41p 에너지바우처 사용 부분 참조

○ 하절기 당겨쓰기 안내 및 접수

- (적용신청) 희망 세대의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 내(~'23년 9월 30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 제도 안내 및 신청
- (해제신청) 희망 세대의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 전('23년 6월 27일)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여부 확인하여 "붙임1. 공통 서식 中 공통서식 제 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체크
-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지자체업무포털>지자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동절기 유사서비스 수급자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만 동절기에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지원을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권 선택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 타 유사서비스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 기 사용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중복수급으로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 1) 바우처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
 -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카드발급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다른 세대원 명의로 카드 발급을 신청 (전화로 카드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 등은 36-38p 실물카드 부문 참조)
 - *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카드로 신청
- 2) 만 12세 미만의 수급자가 바우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엔 카드 발급이 가능한 다른 세대원이 없다면 만 12세 미만은 카드발급이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가상카드로 신청을 안내
 -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에 다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만 12~13세는 본인이 단독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발급
- 3) 도시가스사별로 결제방식(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은행별 BC카드)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결제방식·카드 등을 확인 후 카드 신청 필요(붙임4 - 124p 참조)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 1) 에너지요금 고지서의 주소와 대상자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2) 연체요금(미납금)이 있는 경우, 연체금이 아닌 하·동절기 요금(사용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 기준)이 차감되며, 과다한 연체요금으로 에너지공급이 중단된 세대의 경우(요금차감 불가)에는 가상카드 신청이 불가(실물카드로 변경 신청)
 - 동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실물카드는 별도 에너지원을 선택할 필요가 없음)

○ (신청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242p)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p238)

4

신청서류 안내

○ (공통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공통서식 제1호))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 확인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확인서를 제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
 - * 담당공무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불필요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시 **“붙임1. 공통 서식 中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체크**

○ (감소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 * 취사용 도시가스요금만 표기된 고지서(영수증)를 가져온 경우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다른 에너지원의 가상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후 선택 신청

※ 고지서(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번호 확인 방법

- 고지서(영수증) 분실, 직권신청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에너지공급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해당 세대의 고객번호를 요청 가능(「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단, 유선 확인시 고객번호 입력에 오류가 있으면 타인이 차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력 오류가 없도록 거듭 확인 필요
- 고객번호 표기가 ‘고객번호/납부자 번호/납입자 번호/사용 계약 번호’ 등 공급사별로 다양함으로 「붙임4」 공급사 현황 자료에서 해당 공급사의 고객번호 명칭을 확인하여 해당 번호를 입력

5

신청서류 검토

- (세대원 특성 및 세대원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

* 세대원 특성 : 주민등록표상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포함 여부

** 세대원수 산정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산정

- **(고객번호 확인)** 가상카드(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요금 고지서(영수증)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비교하여 시스템 입력 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 함

- * 고객번호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 * 행복이음 시스템 내 고객번호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오류를 방지하고, 시스템에서 검증되지 않는 고객번호는 신청인이 가져온 고지서상의 고객번호를 재차 확인하여 입력
- * 1주택 다세대 등 1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세대가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 중복된 '전기'고객번호로 가상카드 발급 가능(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은 1개의 고객번호로 1세대만 신청 가능하므로 잔여세대는 전기 차감을 신청)

※ 신청서류 검토시 유의사항(공급사코드 및 고객번호 관련)

- 아파트 단지의 고객번호는 '단일 고객번호' 또는 '세대별 개별 고객번호'가 있고, 동일단지 내에도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고객번호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객번호 확인시(고지서 미제출시), 동일단지 내 '주택용 고객번호'와 '상가 고객번호' 등을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
- 1개의 에너지공급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명만 보고 에너지원별 공급사 코드를 오기입하지 않도록 유의(붙임3.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사명 및 공급사 코드 참조)
- 고객번호 자릿수에 특히 유의해야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함(단일고객번호의 경우 동·호수 정보 반드시 필요)
- 공급사별로 고객번호 명칭이 다르므로 해당 공급사의 정확한 고객번호 확인 필요(예. 고객번호, 납입자번호, 사용계약번호 등)
- 주공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도 전기 공급사가 동별로 다를 수 있음을 유의(예. 101~106동 : 주택관리공단(전기), 201~205동 : 한전 전기)
- 주공 아파트의 경우 대상세대의 지역난방, 전기 공급사 선택 시 주택관리공단(전기/지역난방)인지 그 외의 공급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선택

- **(하절기 당겨쓰기 여부 검토)**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여부를 검토하여 행복이음 시스템에 기재해야 함(공통서식 제1호, 105p)

- *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함
-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23.9.30.까지, 해제는 '23.6.27.까지만 가능함
-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를 신청(또는 신청예정)한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했을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가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6

신청서 입력(읍·면·동) - 행복이음 시스템

-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받을 시에는 신속하게 시스템에 입력 실시
- 시스템 입력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접수일자 생성 확인)

* 「저장」만 하고 「접수」버튼을 눌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접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결정·통보가 지연
 *** 신청 마감일(23.12.29.)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서 입력 및 저장접수 필요

- 「접수」처리 후, 신청정보 오류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신청취소 및 접수반려 요청
 - * 단, 시·군·구에서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 반려가 불가하므로 읍·면·동에서는 중지 처리 후 재신청 진행
 - * 결정만 하고 송수신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결정 취소 후 읍·면·동으로 접수 반려하여 정보 수정
- 복지로 온라인 신청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건 행복이음 시스템에 접수 처리 (* 「붙임7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 참고)

7

결정(시·군·구) - 행복이음 시스템

- 신청서류 및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 산정표>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 지원금액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됨
- 신청정보 오류 등으로 정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취소, 접수반려 실시(행복이음 시스템)
 - * 단,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 반려가 불가하며 정보수정을 위해서는 중지 후 재신청
- 읍·면·동 신청·접수 후 결정 이전에 대상자가 전출했을 경우, 전출지의 시·군·구에서는 시스템상에서 「신청취소」를 해야 하며, 해당 대상자가 전입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 결정 이후 전출했을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재신청 필요

8

통지(시·군·구) - 행복이음 시스템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격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공통서식 제3호)
 - * 통지내용 : 대상자격 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카드종류(실물/가상카드), 가상카드 에너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
- 에너지바우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자격상실(26p) 참조)
 - * 「에너지법 시행령」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결정 및 통지”
 - * 자격상실로 인한 중지 사유 중 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통지 제외(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사망,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

9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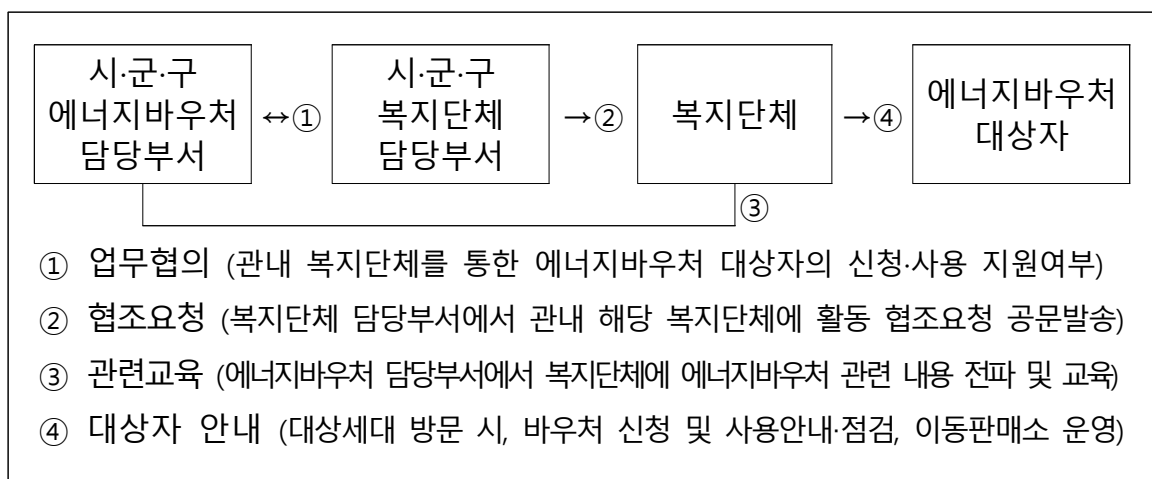
- 시·군·구는 대상자의 원활한 바우처 사용을 위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관리 및 읍·면·동 사용률 관리
- (읍·면·동 사용률 관리) 미사용 세대 및 사용저조세대 사용 독려
 - 가상카드 및 실물카드 미사용 세대 및 사용저조세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기간 내 사용 안내 및 적절한 사용을 독려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지자체 업무포털 - 가상카드 미사용자, 실물카드 미사용자] 메뉴에서 미사용 세대 명단 조회 가능
- (재신청 처리) 사망(2인 이상 세대) 및 전출입으로 중지된 세대에 대한 조속한 재신청 처리로 지속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 유도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지자체 업무포털 - 재신청 대상자] 메뉴에서 중지된 세대 명단 조회 가능
 - 사망으로 중지된 세대는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 처리
 - 전출입으로 중지된 세대는 전입지 정보로 재신청 처리

○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대상자 1:1 안내

- 시·군·구는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효과적인 신청·사용 지원 *지자체 내 관련 복지단체 담당부서와 협조

대상기관	역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종합복지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센터(요양보호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을 통한 대상자 1:1 맞춤 안내 - (알림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 - (도우미)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이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 안내 * 카드발급, 카드사용, 가맹점안내, 이동 판매소 운영 등

- 업무추진절차



○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이동판매소 운영

- 대상 : 고령,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
실물카드 신청자 중 사용금액이 0원인 대상자 등

단 계	내 용	필수 확인사항
지역 검토	등유, LPG, 연탄 미사용자 많은 지역	읍·면·동 협조
지원 에너지 선정	등유, LPG, 연탄 중 지원에너지 선정	
대상세대 발굴	에너지 배달을 희망하는 대상세대 모집 -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확인 (보일러 사용가능여부 등) - 구입 희망 에너지 조사 - 주소 확인 및 방문일자 확정 등	국민행복카드 소지 및 카드사용등록여부 확인
참여업체 모집	이동판매소를 운영하여 대상세대에 배달할 업체 모집	이동식 카드결제기 소지
이동판매소 운영	해당 대상세대에 방문하여 에너지 배달 및 구입비 결제	

- (참고) 운영 사진

이동판매소 운영차량	대상세대에 등유 배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좁은 골목을 오갈 수 있는 작은 차량이 유리	- 등유보일러나 보관용기에 등유를 배달	- 이동식 카드결제기 필요
		

- 에너지바우처 발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대상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1 대상자 정보 확인조사

-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부정수급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세대원 수 등을 확인 가능

2 대상자 정보변경

- **(자격·지원금액 유지)** 최초 결정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사용기간, '23.7~'24.4월) 동안 유지됨
- **(재신청)** ① 대상자의 사망(2인 이상 세대에 한함)의 경우 대상자 변경 재신청 가능, ② 전출입(가상카드 대상자) 으로 자동중지 된 경우 고객센터, 주소 변경 등을 위한 재신청 가능

* 붙임7.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 참조

- (대상자 사망시) 대상세대內 대상자 변경을 위한 재신청

- * 대상자 사망시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사망으로 인한 자동중지(다음날 오전 7시 35분)가 되며, 담당공무원은 다른 세대원(수급자가 아니어도 됨)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1인 세대는 해당 없음)
- * 사망으로 인한 재신청시,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실물카드는 새로운 대상자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하여 잔액 사용 가능)
- *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행복이음 시스템이 자동중지(다음날 오전 7시 35분) 되며, 사망과 동일하게 다른 세대원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상카드 대상자의 전출입시) 고객센터, 에너지원 변경을 위한 재신청

- * 가상카드 대상자 전출입시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전출입으로 인한 자동중지(다음날 오후 6시 5분)가 되며, 전입지의 담당공무원은 고객센터 또는 주소 변경 등을 위한 재신청 안내
- * 전출로 인한 에너지 공급 해지 요금 정산 시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차감) 불가
- * 재신청시, 기존 대상자격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

- (정보수정) '이용권(실물↔가상)',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번호', '주거형태'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지처리 후 정보수정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23.5.31~'23.6.27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5.31~'23.9.30
- 이용권(실물↔가상),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연락처, 대상자, 세대원 증가	'23.5.31~'24.4.30

* 붙임7.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 참조

- (정보수정 : 이용권,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연락처, 세대원수, 하절기 당겨쓰기)

· [바우처신청] 화면에 접속 →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 「이력확인」 클릭 → 「변경선택」을 클릭하여, 수정해야할 항목을 모두 선택(중복선택 가능)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변경 후 '확인' 및 '저장' 후 「신청접수」

- (정보수정 : 대상자 변경)

·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대상자로 변경할 세대원을 체크하여 [바우처신청] 화면에 접속 →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 「정보수정」 선택 후 「변경선택」을 클릭하여, '대상자변경' 선택 → '이전대상자' 「이력확인」 클릭 후 추가 정보 변경 사항(이용권, 고객번호 등)이 없으면 '확인' 및 '저장' 후 「신청접수」

* 「소득/등급」설정에 세대주와의 관계 중 '본인'이 두 명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한 명을 클릭하여 다른 관계로 지정하여 '본인'을 한 명으로 수정 후 진행

3

자격상실 (시·군·구)

○ (자격상실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읍·면·동 담당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자격에 위와 같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포기를 희망하거나 기타 중지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상에서 [중지환급 신청] - [중지환급사유] - [중지신청(본인포기)]를 선택하여 절차 진행

* 본인포기로 중지한 경우에도 추후 재신청 가능

4

개인정보 보호

○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사 등은 신청자 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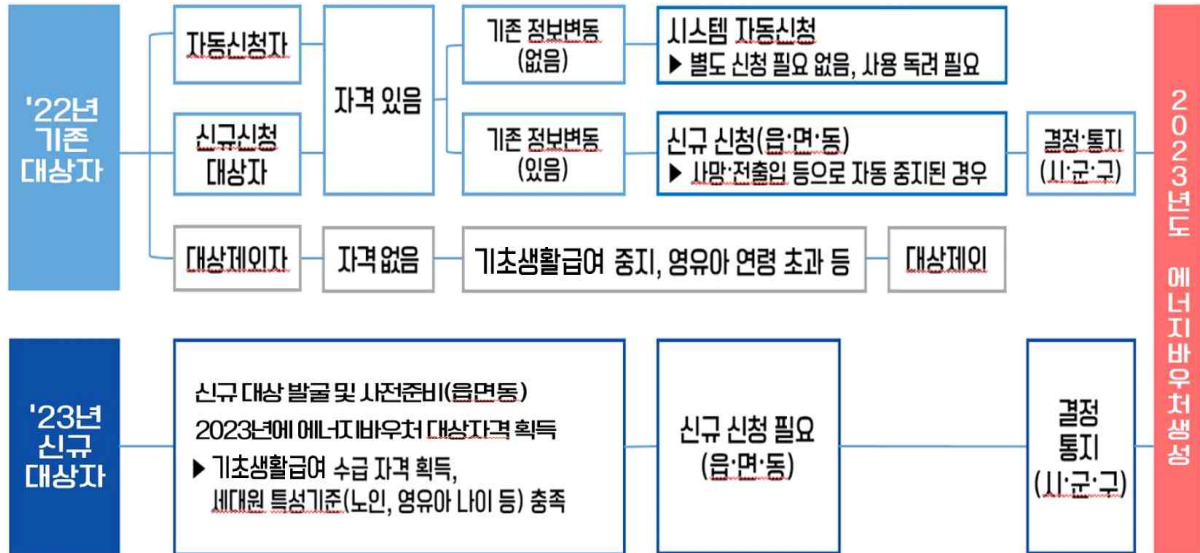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접수 후 보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5년이며,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요망(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3. 기존(2022년도) 대상자 정보 관리

◇ 행복이음의 기존('22년도)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23년도 지원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23년 지원내용과 신규 및 재신청 안내 실시



1

기존('22년) 대상자 정보 관리

- 담당 공무원은 행복이음 시스템(세대원정보 포함)에서 관할 지역내 기존('22년)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제외된 대상자, 자격이 유지된 대상자(자동신청자 및 신규신청 필요자) 등을 구분
- 공단에서 제공(5월 송부)하는 자동신청자 등 대상자 명단 참고

- 1) **(자동신청자)** 기존('21년도) 대상자 중 '23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정보 변동이 없어 '23년도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된 자
- 2) **(신규신청자)** 기존('21년도) 대상자 중 '23년도 지원기준은 충족하나, 정보 변동*이 있어 자동 신청되지 않아 신규 신청이 필요한 자
 - * 에너지바우처 중지, 대상자 자격, 세대원수 변동, 전출입으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 변경, 신청서와 현재 소재지 불일치 등
- 3) **(대상제외자)** '22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받았으나, '23년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격 상실, 사망, 연령초과 및 임신부 요건 등으로 대상자격이 없는 자

2

자동신청자(신규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22년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23년도에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
 - 행복이음 시스템 내 신청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전자바우처 내 신청정보 등의 대상자정보 변경여부를 판단('23년 4월 기준)

- 대상자에게 자동신청 반영 결과 및 '23년 사업내용 안내 필요
- 정보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
- 자동신청 된 이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23.9.30.까지, 세대원 감소 및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23.6.27.까지 재신청을 하여야 함

3

신규신청자(자동신청에서 제외되어 신규신청이 필요)

- 세대원수에 변동이 있어 지원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세대원수에 변동이 없으나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전출입이 발생한 대상으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이 변동된 경우
-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되었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 대상자 사망(세대원내 다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식은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통지(시·군·구) 절차 필요

☞ 대상자에게 '23년 사업내용(지원금액, 사용기간 등)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신규 신청하도록 안내

☞ 신규신청자 신청 안내 시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행복이음 시스템에 기재

* '23년 12월 29일까지 신규 신청 시 신청 가능하며, 기존 대상자의 적용 신청은 '23년 9월 30일까지, 해제 신청은 '23년 6월 27일까지 가능

*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기존대상자('22년도) 중 신규신청 필요 대상자 처리방법

- 기존 수급자의 정보가 변동(주소, 세대원 등)된 경우에는 신청을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 ('신청구분'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신규신청」으로 진행)

- 관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이 있는 대상이 있는지 복지 담당 부서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발굴 및 신규 신청
- 신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신청
- 관내 전입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복지할인 등을 재 신청하는 대상자 중에 에너지바우처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확인
 -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수급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문자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복지부)
 - (행복이음 시스템 메뉴 위치) 복지대상자관리 → 맞춤형급여안내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조회 → 검색항목 선택 후 조회(안내사업 “생활”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통합업무시스템

수급가능성판정 기준정보 관리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②

- 맞춤형급여안내 가입 신청
- 맞춤형급여안내 변경/중지 신청
- 맞춤형급여안내 가입현황
- 맞춤형급여안내 상세현황
-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조회 ③
- 판정결과 적권신청 대상 관리
- 맞춤형급여안내 갱신 관리

수급가능성판정 실행 관리 >

수급가능성판정 결과 관리 >

맞춤형급여안내 연계 관리 >

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평가	상담	기관관리감독	신청관리	소득재산	자료정비
양육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오픈마켓	보육	노인	법정부자격을취득관리
자활지원	사례관리	긴급복지	맞춤형급여안내	기준관리	복지지원	법정부서비스의뢰
법정부소득재산조사	법정부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접수·제공	사회서비스현황관리	사회보장제도협의	복지사업정보관리	복지지도분석
민관정보공유	지방상생보장위원회	노인돌봄	장애인복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초생활보장	기타생활지원
장애인연금	결혼중개업	보건지원	의사상자	연계모니터링	의료급여	사할린
통합알림	시스템관리	기본정보	청년월세지원	모바일행복e음(PC용)		

☺ 매뉴얼

공지게시판

확인해야할 공지가 1건 있습니다.

중지	행복이음 개인정보 주요 위반사례 안내	2023-04-17	New
중지	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2023-04-13	

✓ 최근 열어본 화면

- 바우처 홈(읍면동)
- 바우처 신청현황
- 바우처 중지환급 신청관리
- 바우처 송수신관리

✓ 즐겨찾는 화면

- 계좌변경신청내역조회
- 계좌정보관리
- 바우처 송수신관리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

-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조회** 11550 UNFD(11550M)

소재행정종 ☒ 관내 ☐ 권외 ☐ 전체

*판정일자 2023-02-01 ~ 2023-02-28

지원단위 전체

안내문발송일자 YYYY-MM-DD ~ YYYY-MM-DD

가업자 성명 _____ Q

안내사업 성별 ▼ 여년지바우처 ▼ ①

안내문발송여부 전체 ▼

안내문발송방법 전체 ▼

대상 현황 (총 659건)

소재행정종	가입신청인	가구주와의관계	가구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안내그룹	사업명	지원단위	지원유형	관정일자 *	안내문발송여부	안내문발송일자	안내문발송방법	안내문조회	가입구분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3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3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1	안내발령비동록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3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3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5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6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발송	2023-02-16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조회]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생활	에너지바우처	가구	서비스이용권	2023-02-10	미발송				신청간주 서울

20 < 1 2 3 4 5 6 7 >

대상제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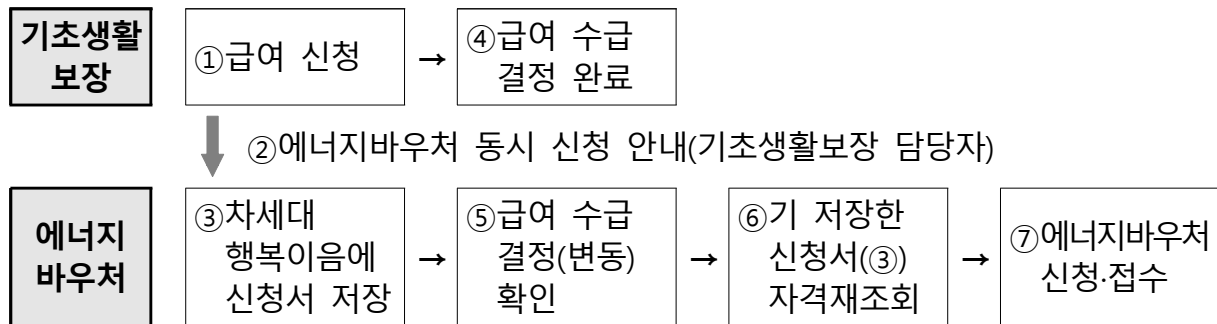
- 전체 세대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되거나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 전체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 영유아의 연령초과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대상자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담당공무원은 관내 기존('22년도) 대상자 명단(공단 제공 예정)을 추출하여, 신규신청이 필요한 기존 대상자 등을 구분하여 관리
 - * 전출입, 세대원 수 변동 등으로 신규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자동중지' 처리 예정
 - * 담당공무원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기존('22년도) 대상자의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22년도)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 노력
- 자동신청자가 기존('22년도) 신청정보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재신청 조치. 특히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9월 30일까지, 세대원 감소와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는 6월 27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유의(공통서식 제1호, 105p)
 -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외 정보변경은 '24.4.30일까지 가능
 - * 신규신청자의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및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필요)
- 담당공무원은 관내 자동신청자가 '23년 지원내용과 재신청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 필요

4.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여, 신청 편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23년 신설)

<기초생활보장-에너지바우처 동시신청 업무흐름도>



1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신청 역할 분담

-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을 받은 뒤, 유의사항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 방문 안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내 유의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89호)>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 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은 ①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차세대 행복이음에 저장하고, ②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결정을 확인하여, ③저장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의 자격재조회 후 신청·접수

- * ② 차세대 행복이음 '바우처 변동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기능 상세설명→247p)
- ③ 저장한 신청서의 '자격재조회' 후 신청·접수 필요(기능 상세설명→229p)

<차세대 행복이음 신청서 처리 방법 신규대비>

구분	동시신청 도입 전	동시신청 도입 후
급여 신청자 (수급 결정 전)	신청 불가	신청서 저장 → 급여 수급 결정 확인 → 신청서 자격재조회 → 신청·접수
급여 수급자 (수급 결정 후)	신청서 저장 → 신청·접수	좌동

바우처 발급과 사용

1.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2. 에너지바우처 발급
3. 에너지바우처 사용
4. 에너지공급사 역할

1.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1

실물카드(플라스틱 재질)

- 국가바우처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

* '15.5월에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 복지 바우처 제도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舊고운맘카드)'과 '청소녀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舊맘편한카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하여 17종의 국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가 필요

*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인증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발급 가능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 (체크·신용카드)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 문의

* 단, 전화로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 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 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각 은행 (카드사)별 콜센터 *일반이용문의 (1899-4651)
	전화 발급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 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롯데카드	방문 /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1899-4282
삼성카드	방문 /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1566-3336
KB국민카드	방문/ 전화	KB국민은행, 전북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1599-7900)	1599-7900
신한카드	방문/ 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앱, 신한페이판 앱, 신한은행 쓸(SOL) 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1544-8868

- **(전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

* 계좌압류, 신용불량, 고령, 장애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전용카드 발급처** *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2

가상카드(요금차감)

-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가상카드는 하절기의 경우 에너지원을 전기만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동절기 가상카드 신청자는 별도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요금차감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담당공무원 로그인 필요), 해당 에너지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에너지바우처 발급

1 발급 전 정보전송

- 결정, 통지된 대상자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을 통해 국민행복카드사업자(카드사), 에너지공급사에게 제공
-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결정, 통지 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에게 국가바우처(바우처 지원액(포인트)) 생성을 위한 정보 제공
- (가상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에너지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고객번호, 주소, 지원금액 등)를 에너지공급사에 제공

2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신용체크전용카드로 발급)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카드 유효기간 확인필요(카드앞면 참조))
 - 발급처 직접 방문시 카드종류(체크·신용)와 발급처의 카드보유 상황에 따라 방문 당일 카드 발급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해 카드배송
- (가상카드)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해당 에너지원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내역 확인

3 발급관련 유의사항

- (카드 발급 유의) 담당공무원은 신청, 접수시 가상카드 대상자가 실물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재발급) 분실, 손상될 경우 발급처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실물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을 안내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유효기간)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24.4.30.)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카드는 카드 유효기간 내(카드앞면 참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재사용 가능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
- 롯데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을 월 단위로 적용(예를 들어 12/15일까지 유효기간이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2015년 12월에 발급한 농협은행의 전용카드 유효기간이 '00/01'로 되어 있어 농협 창구 직원들이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 발급 받아야 함을 안내
- (에너지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內 타 바우처와의 이용 관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부적격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아도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內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만 중단되며 다른 국가바우처 서비스는 규정대로 사용 가능
- 신용, 체크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본인 비용 부담으로 계속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사용

1

전기(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 **(실물카드)**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개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 단, 구역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공급사)는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
 - *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카드사: BC)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제 불가
-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세대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농업용·상업용·공업용 전기요금은 차감 불가)
 - *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 단독주택(개별 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전기공급사가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

2

도시가스(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 **(실물카드)** 가스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도시가스 공급사가 개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 단,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 카드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붙임4 참조) **(특히, 전화결제는 일부 도시가스 회사만 가능)**
-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세대에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되며, 단독주택(개별 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도시가스공급사가 발행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표기

3

지역난방(가상카드 사용)

- **(가상카드)** 대상세대에 청구되는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4

등유(실물카드 사용)

- 카드결제 단말기(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카드 사용 가능 단말기, 이하 같음)가 설치된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등유外 타 유류는 바우처 사용 불가)
- *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 등유 결제시 카드결제단말기나 포스 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 유종코드(유종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뜬다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
- * 등유 구매 시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5

LPG(실물카드 사용)

-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LPG판매소(카드사에 LPG 업종으로 가맹점 등록된 판매소에서만 가능)에서 LPG를 구입
- * LPG판매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 판매소↔카드사간 가맹점 재신고 절차 진행 필요

6

연탄(실물카드 사용)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정한 2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 연탄수송업자 및 연탄을 취급하는 기타 연료판매점 등은 카드사에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단, 카드사별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카드사용 공통 유의사항

-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방식)
- 실물카드 경우, 국민행복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 등록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
- 에너지를 구입·결제(실물카드)하거나 요금차감(가상카드)을 받는 경우,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됨(단, 바우처 금액 소진 시 본인 계좌에서 인출됨)
- 기존에 요금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실물카드 대상자의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자동이체로 요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실물카드로 결제 필요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요금에 대한 부분결제는 공급사마다 가부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 후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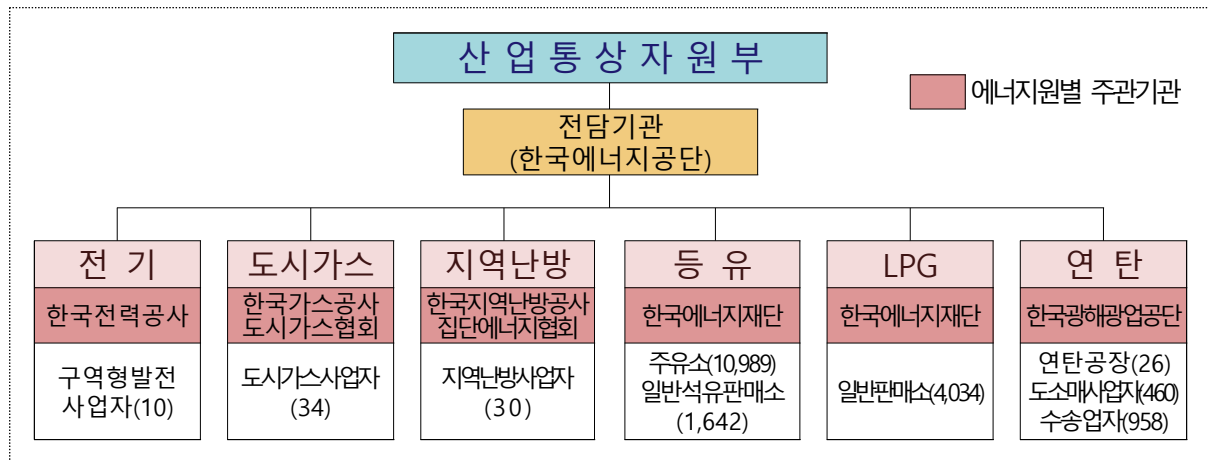
- 전기장판, 냉난방기 고장 등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등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공단,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 또한 공단이 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협조 필요.

4. 에너지공급사 역할

1 에너지공급사 협력체계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공급사로 구성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에서 에너지원별 공급자 총괄 운영·관리, 사후관리 및 홍보·교육 협조 등 전담기관과 에너지공급사 간의 채널 역할 수행
- (에너지 공급사) 에너지 공급, 공급망 내 전달체계 운영·관리(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교육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 및 사후관리 협조 등

< 에너지공급사 협력 체계도 >



2 에너지공급사 역할

- (실물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
 - 에너지공급사는 실물카드를 제시한 대상자에게 카드 결제의 거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요구, 가맹점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에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음
- 에너지공급사는 판매를 위장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현금 대출,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의 에너지 구매 유도 행위 등은 금지
-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 발행 금지 등

○ (가상카드 사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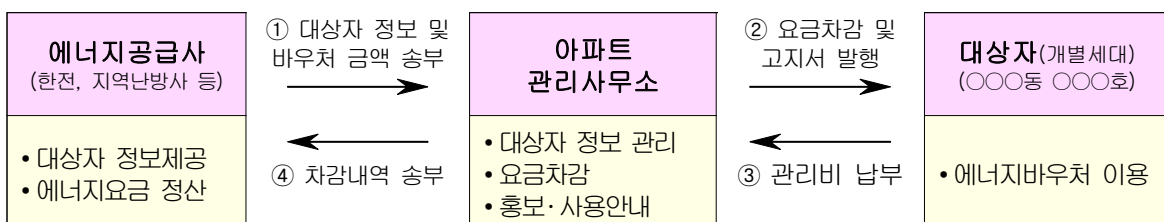
-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
- * (공급사 역할) 가상카드 대상자 정보관리 및 바우처 지원금액 차감 / 전출시 가상카드 요금차감 불가 조치 / 가상카드 사용 관련 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의 정보연계 및 관리 / 기타 가상카드 사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
- 공급사명(코드), 고객번호 오류 등으로 차감이 잘못 이뤄진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과오 청구를 통한 요금차감 정정 실시(「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3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

- 에너지공급사가 제공한 가상카드 대상자별 에너지요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고 대상자별 차감내역을 해당 에너지공급사에게 송부
- * 가상카드 대상자 전출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에너지공급사에게 전출사실을 즉시 알리고, 바우처 사용중지를 요청. 단, 아파트관리비 정산 시 바우처 금액 사용은 불가
-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청 및 사용안내를 적극 협조

<아파트부문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 기존 관리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전기요금할인(한전), 가스요금경감(가스사) 프로세스와 유사
- *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정액할인이 아닌 세대별 사용요금에 따른 차감이 실시되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공급사와 세대별 요금정보를 교환하여 세대별 맞춤 차감 실시(한전·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

IV

사후 관리

1. 기관별 역할 분담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1. 기관별 역할분담

1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에너지법」 제2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처리
 - * 과태료 부과(「에너지법」 제2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질문 및 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진술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도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지방자치법」 제184조 준용)

2

시·군·구, 읍·면·동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사용 여부 확인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에너지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1항, 에너지공급사가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

3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은 시·군·구(읍·면·동)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정사용 점검·조사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 제공 등 업무 지원(전담기관 포함)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전기), 한국가스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집단에너지협회(지역난방), 한국에너지재단(등유·LPG), 한국광해광업공단(연탄)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2. 부정사용 모니터링

1

부정사용 모니터링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사용 모니터링에 필요한 바우처 이용·결제 정보 제공(국가바우처→에너지바우처 포털)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는 에너지공급사, 바우처 대상자 점검 실시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 (에너지공급사)

※ 에너지공급사 점검·조사 개요

- 에너지공급 거부사유 발생(민원접수) 및 시·군·구(읍·면·동)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결제'가 의심되는 에너지공급사에 대해 점검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사용 등이 신고 된 공급사 점검

-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2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환수 및 반납절차

- 부정사용 관련 사항 발견 시 조치 이전에 공단과 사전협의 필요
- (당해 연도 사업)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

구 분	주 체	내 용
조사 및 확인	시·군·구(읍·면·동)	▶ 이용권 환수필요사항 현장조사 및 확인서 작성
입금계좌 안내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에게 입금계좌안내
환 수	시·군·구(읍·면·동)	▶ 환수금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입금
중 지	시·군·구(읍·면·동)	▶ 지자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에너지이용권 사용중지
통 지	시·군·구(읍·면·동)	▶ 조치내용 대상자에게 통지
통 보	시·군·구	▶ 광역시도, 공단에 에너지이용권 환수 결과 통보
통 보	공 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자체 환수결과 통보

V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3. 이의신청 처리 및 예외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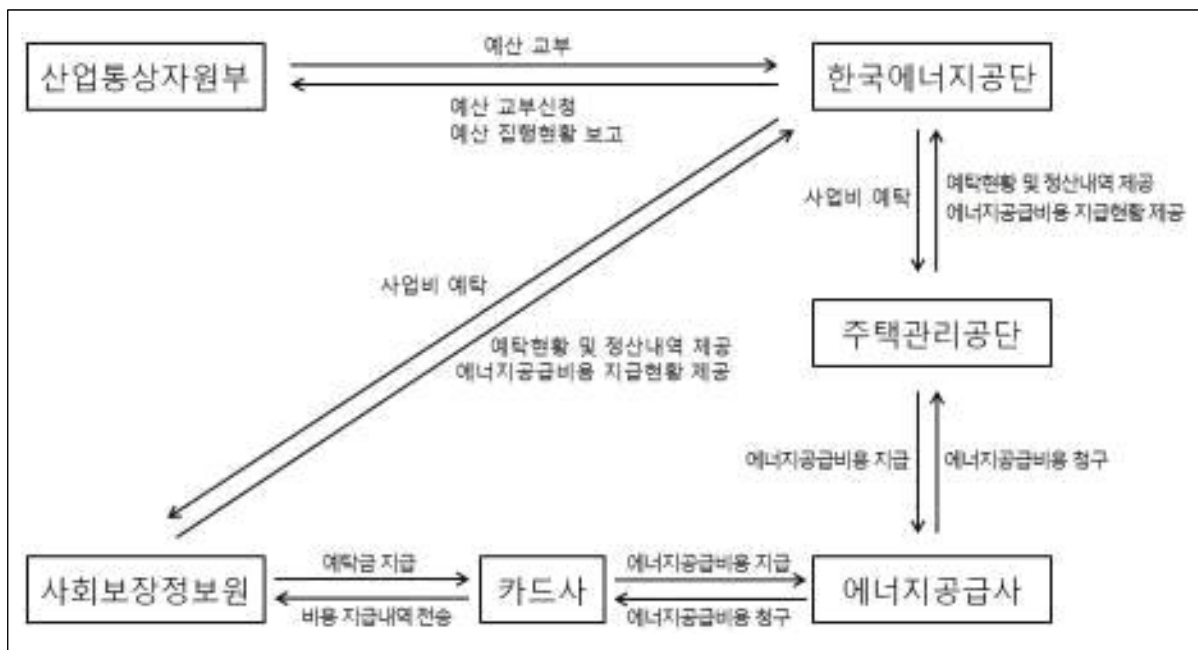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1

위탁주체와 수행기관

- (위탁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위탁업무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 에너지바우처는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관련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는 에너지바우처(주택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차감 등) 사업비는 별도 정산을 통해 관리
- (위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 *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 예산 및 정산 부문 업무처리 흐름도 >



2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으로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 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사업비용을 정산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처리
- 주택관리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 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공급사와 사업비용을 정산

3

예탁시기

- 대상자가 일괄(대량)구입 또는 분할 구입 등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비 전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에 예탁(사업시행(카드결제승인·요금차감) 이전에 예탁 실시)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1

바우처금액 청구

- (청구기관) 에너지공급사
- (실물카드 금액 청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달된 바우처 사용금액 내역이 자동으로 카드사에 청구
 -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에너지 사용금액 결제
- (가상카드 금액 청구) 요금차감방식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제공된 에너지 금액 내역을 근거로 국가바우처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카드사·주택관리공단 등에 바우처 사용금액 청구
- (청구기간) 2023.7.1. ~ 2024.4.30.까지 청구·지급
 - (실물카드) 2023.10.11. ~ 2023.4.30.까지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승인된 비용에 대해 청구 가능
 - (가상카드) 2023.7.1. ~ 2023.9.30.(하절기), 2023.10.11. ~ 2024.4.30.(동절기)까지 발행된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한 후 청구 가능

2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

- (지급기관)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주택관리공단
- (지급방식) 에너지공급사가 실물카드(카드단말기 결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결제가 발생하여 바우처 금액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에너지 공급사에 입금
 - * 주택관리공단↔에너지공급사간 청구·지급은 기존 아파트관리비 방식에 준하여 실시

-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시, 국가바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집행하고, 지급내역을 국가바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으로 전송
- * 카드사 지급내역 및 예탁금 입출금 내역은 국가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주택관리공단은 자체 계좌(예탁금을 교부받은 계좌)에서 비용을 집행

3

비용의 정산

- 카드사와의 비용 정산 업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
 - * 카드사와 연계되지 않은 정산 업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종료 후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종 정산 실시
- 주택관리공단은 매월 에너지바우처 사용분에 대해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사업종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종 정산 실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주택관리공단은 사업 종료 후 예탁금 잔액 및 이자를 전담기관에 환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경유)에 최종 정산내역 보고
 - * 단, 바우처 대상자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공급사가 청구한 바우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4

과·오 금액 청구 처리방안

- 에너지공급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바우처 금액 과·오 청구 여부 확인
- 과·오 청구 금액 처리 방안
 - (실물카드) 결제 취소 및 추가 매입 등을 통해 과·오 청구를 처리
 - *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오 청구 처리 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ARS 등)를 실시
 - (가상카드) 요금차감이 누락되거나 과오 차감된 경우, 익월 등의 에너지요금에서 추가 차감·징수를 통해 과·오 청구를 처리
 - * 익월 에너지요금 추가 차감·징수 처리 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ARS 등) 실시

3. 이의신청 처리 및 예외지급(환급형 바우처)

1

이의신청 처리

-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접수(읍·면·동)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읍·면·동, 시·군·구) → 이의신청 조차·통지(시·군·구)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 (이의신청 조치)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이 처분(처리)되어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 사용중지 해제 등을 시행
 - (사용기간 만료 후 처리)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이의신청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의신청 세대의 에너지비용 지출 사실을 증빙하고 지원금액을 계좌로 입금
- * 단,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최종 정산처리된 이후에 이의신청 처분이 변경 결정된 경우,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에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

2

예외지급 (환급형 바우처)

- (예외지급의 범위) 주거환경, 행정 착오 및 자연,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 신청, 발급,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외지급 사유로 판단하여 인정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지급 여부를 결정

○ **(예외지급의 사례)**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 중앙난방식 보일러 아파트 등 요금차감,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
-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카드단말기 미보유, 유종 설정 불가, 결제 오류 등

○ **(처리방안)** 해당 세대에서 에너지비용 지출 내역 등 예외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지급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자체 신청내역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급(계좌입금)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공통서식 제4호),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카드, 결정통지서 등)

* 단, 행복이음 시스템(읍·면·동에서 예외신청 접수받는 경우)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

○ **(처리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 입금(정보 확인이 완료되는 순으로 입금)

FAQ (자주 묻는 질문)

1. 신규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2. 재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3. 대상자 신청·사용 관리 체크리스트
4. 제도 · 지원기준 문의
5. 신청 관련 문의
6. 신청정보 변경 문의
7. 사용 관련 문의
8. 외국인 관련 문의

1. 신규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차세대 행복이음 접근 권한 부여 받기

2 차세대 행복이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①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클릭
- 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서 신청할 대상자 선택
- ③ [서비스 찾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

3 [대상자], [신청자] 지정 및 건강보험료 데이터 조회

- ①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만 지정,
[신청자]는 세대원 중 누구나 실제 신청하는 자로 지정
※ 직권신청인 경우 대상자를 신청자로 지정
- ② [건강보험료조회] 버튼 클릭
※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진보료 수동 입력] 체크[산정구분]
“지역” 선택>건강보험료 항목에 “0” 입력

4 예상결과는 참고용으로 [신청불가능]도 신청 가능

- ① 예상 결과는 참고용으로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가 [신청불가능]이어도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라면 [일괄신청] 클릭하여 신청접수 가능

5 [대상세대] 자동선택 안 되는 경우 증빙서류 등록 필요

- ① 신청접수 시 [대상세대에서 자동선택이 안 되는 경우] 해당하는 [대상세대] 체크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화면 맨 하단의 [구비서류에 등록] 후 신청접수
* 증빙서류 : ①임산부 :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분만 후인 경우 6개월 미만 확인 필요), ②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사업안내서 부록에 나와있는 병명 코드나 기호가 기재된 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구비서류로 첨부(암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서류), ③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 등 법정서식은 없으나, 지자체 담당자가 소년소녀가정임을 확인해준 약식 확인서 등 서류 첨부
* 산정특례 대상자는 시스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 화면이나 문서(공문 등)를 구비서류로 첨부 가능

6 [에너지원 고객번호] 동/호 필수 입력

① [에너지원 고객번호] 란의 동/호 필수 입력

※ 단, 주거형태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촌] 선택 시
[하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 입력 불가 및 [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 실물
카드로 자동 체크

7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이용권 선택

① 에너지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아파트오피스텔’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요금차감 등 사용 가능한 이용권 선택

8 고객번호 검증 등 관련 문의(※중요)

① 입력한 고객번호에 해당되는 주소가 없더라도 고지서 또는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고객번호가 맞으면 신청접수 가능

② 정상적인 고객번호임에도 검증이 원활치 않은 경우, 거주지 주소와 고지서 상의 주소가 일치하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를 우선으로 하여 신청(시스템상 고객번호 검증은 참고용)

※ 잘못된 고객번호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재신청을 통한 정보변경을
해야하며 정정하지 않을 시 사용기간 종료까지 요금차감이 안될 수 있음

9 [저장] 후 [신청접수]까지 클릭해야 완료(※중요)

① 화면 맨 하단의 [저장] 클릭 후 오른쪽의 [신청접수]까지 클릭해야 신청접수 완료

10 신청접수 후 바우처 신청현황 확인(※중요)

①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신청현황] 클릭

②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

- 신청 : 읍면동에서 [저장] 클릭 후 신청상태(수정가능) ☞ 시·군·구로 미전송
- 접수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클릭 후 접수상태(수정불가능) ☞ 시·군·구로 전송
- 판정 : 시·군·구에서 결정한 상태
- 응답대기 : 신청정보 송신(시·군·구) 후, 바우처 생성 대기 상태
- 완료 : 바우처 생성 및 모든 절차 완료 상태(통지서 출력가능)
- 신청취소(읍면동·시·군·구 가능) : 시·군·구 결정처리 전 가능, 재등록은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기존 신청서 수정 불가)

※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신청서의 상세보기 메뉴로 이동하며 [신청자][대상자]를
제외한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등 수정 가능(단, 접수 이후에는 수정 불가)

2. 재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신청상태가 [중지]여야 재신청가능(※ 중요)

- ① 재신청 사유 : 정보수정(이용권, 주소, 고객번호 등) 또는 본인포기
 - ② 중지방법 : ①[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대상자 관리]-[바우처 중지환급 신청관리]에서 맨 아래 하단의 [중지환급신청] 클릭, ②[바우처 중지환급신청등록] 화면이 뜨면 검색할 대상자 입력 및 에너지바우처 선택, ③하단의 [중지환급신청]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 (주의) 사망, 전입 중지처리(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이용권이 가상카드인 경우에만)는 시스템에서 자동중지처리 되므로 임의 중지 금지
- ※ 자동중지 반영시각은 사망신고후 익일 7시 35분, 전입신고후 익일 18시 5분이후이며 읍면동 담당자는 다음날 재신청 진행

2 세대원 하향 조정 재신청만 6월 27일까지 가능(※ 중요)

- ① '24년 4월 30일까지 재신청 가능 : 이용권 선택(실물↔가상, 유사 서비스), 동절기 고객번호, 동절기 공급사, 동절기 에너지원, 동절기 대상자, 하절기 고객번호, 하절기 공급사, 주거형태, 세대원 상향
- ② 대상자 변경 : ①변경할 대상자가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변경 가능, ②기존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변경 시 남은 세대원의 소득기준 관계없이 세대원 중 누구라도 가능

3 차세대 행복이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방법-①[나머지]

- ①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클릭
 - ② [바우처신청] 화면의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 ③ [이력확인] 버튼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 조회
 - ④ [변경선택] 버튼 클릭 후 [정보변경구분선택]에서 변경이 필요한 항목 선택 후 [확인]
- ※ 세대원 하향 조정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 24.4.30까지 변경 가능

4 차세대 행복이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방법-②[세대원 변경]

- ①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클릭
 - ② [바우처신청] 화면의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 ③ [변경선택]에서 [세대원 변경] 선택 후 [확인] 클릭
- ※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
- ④ [이력확인] 버튼 클릭>[저장]>[신청접수]

5 차세대 행복이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방법-③[대상자 변경]

①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변경할 대상자를 [대상자] 항목에 변경 체크

※ 변경할 대상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함

※ 대상자 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소득기준과 상관 없이 변경 가능

※ 사망중지 변경 시 사망자가 아닌 변경할 대상자(세대원)으로 조회하여 신청

② [바우처신청] 화면의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③ [변경선택] 버튼 클릭 후 [대상자변경] 선택 후 [확인]

※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

④ [이력확인] 버튼 클릭 시 [이전 대상자] 정보 입력<저장>[신청접수]

※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으로 선택된 가구원이 2명이상입니다.” 알림 메시지 발생한 경우, [소득/등급설정]의 [가구원 소득수준 산정]에서 세대원 중 본인 2개로 체크되어 다른 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변경 필요

3. 대상자 신청·사용 관리 체크리스트

<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 내 확인 가능한 내용 >

- (대상자현황) 에너지바우처대상자에대한상세정보파악가능(신청정보,사용현황등)
- (지자체 공지사항)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공지
- (지자체자료실) 사업안내서,교육자료,신청서식등에너지바우처주요자료확인가능
- (지자체 통계) 지자체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 및 사용률 통계 확인 가능
- (홍보자료) 포스터, 리플렛, 홍보영상 등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확인 가능
- (가맹점현황) 실물카드 결제가 가능한 등유, LPG 등 가맹점 조회 가능
- (환급형바우처 신청) 환급형바우처 신청 및 승인
- (신청대상 확정 조사) 대상자여부확정조사및 미신청자조회로 신청독려활용
- (동절기 미사용 조사) 동절기미사용사유조사및 미사용자확인하여사용독려활용
- (재신청 대상자) 사망, 전출입 중지된 대상자 조회로 및 재신청 독려 활용
- (가상카드 미사용자) 가상카드 미사용자 확인하여 사용 독려 활용
- (실물카드 미사용 조사) 실물카드 미사용자확인하여 사용 독려 활용
- (에너지바우처플러스) 에너지바우처플러스사업신청및 플러스사업대상자관리
- (QnA게시판)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게시판

1

신청 관련사항

- ☑ 신청 자격 확인 :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신청 이후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당해연도 사용기간까지 사용 가능, 신청화면에서 '신청불가능'으로 떠도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 시 '일괄 신청' 버튼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자격이 자동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필수
-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에 맞게 신청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가상카드 신청 시 요금고지서 상 고객번호 반드시 확인
 - * 신청 오류가 가장 빈번한 건이며, 대상자가 아닌 민간세대에 적용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사자 간 직접 환수·환급 처리해야함)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유사서비스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유사서비스'로 선택)
- ☑ 자동전환 시기에 중지되어 미신청된 대상자 확인(질환자 등 행복이음에서 자동 확인이 안되는 대상자 등)
- ☑ 외국인 세대원은 대상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필요
- ☑ 전화번호 입력시 지역번호 정확히 입력(자릿수 오입력시 전송 오류 발생)
- ☑ 가상카드 신청자 고객번호 확인 필수. 난방용이 아닌 취사용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인 경우 동, 호수 기입 필수

2

사용 관련사항

-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결정(신청접수 완료)된 이후에는 수급자 탈락 등 중간에 자격 상실되더라도, 최초 신청했던 자격이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까지 유지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 사망, 전출입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중인 대상자 관리 : 업무포털 내 '재신청 대상자' 메뉴에서 확인 후 행복이음을 통해 재신청(대상자 사망 후 남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상자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 * 사망, 전출입으로 자동중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행복이음 고객센터로 문의
- ☑ 예외지급 대상자 관리 : 예외지급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명단을 관리하여 예외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
- ☑ 하절기 지원금액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동절기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 *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는 하절기 이용금액을 모두 동절기에 이용 가능
- ☑ 에너지바우처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에너지 사용비용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음
- ☑ 전기(주택용, 일반용 저압, 심야전기), 도시가스(난방용, 취사용), 지역난방(난방용, 취사용)만 요금차감 가능
- ☑ 실물카드로 등유 구매 시 유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비 포함해 결제 가능
- ☑ 가상카드(요금차감) 대상자에 사용기간 안내 : 사용기간에 사용한 난방비 요금차감이 아닌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됨을 안내
- ☑ 사업 종료기간 전까지 대상자 정보 변경신청(재신청) 시 행복이음 시스템 내 시군구 송수신까지 반드시 처리 완료 요망
 - * 행복이음 바우처 메뉴 내 [신청관리]-[바우처 신청현황] 내 신청상태 '완료' 여부 확인

3

기타 사항

- ☑ 업무포털 ID, PW 확인 : 비밀번호 초기화 필요시 콜센터(1600-3190) 또는 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052-920-0533~9) 연락
 - * 행복이음 ID, PW 확인은 행복이음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도 · 지원기준 문의

Q1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에너지는 여름·겨울철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주(主) 냉·난방에너지를 의미하며, 그 에너지로 연계 사용되는 온수, 취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이나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에 지원합니다.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동절기 기간('23.10.11.~'24.4.30.)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6p 참조).

※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타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수준)만 대상이 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급여 특례자도 인정)가 아닌 타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세대 전체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세대의 소득을 뜻하며, 소득액과 재산액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에너지바우처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및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뜻함

- 본인의 정확한 수급자격 요건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동)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과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암환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타 질환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 인정).
- 질환자 상병코드는 질병분류 정보센터(www.koicd.kr)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Q5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또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만약,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위탁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보호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보장시설급여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 수급 여부를 모르신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설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 받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Q8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는데 동절기에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23년 10월 11일~'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유 나눔카드 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반납하고 연탄쿠폰이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사용 시작('23년 10월 11일) 전까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유사서비스 수급'으로 중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하절기('23년 7월 1일~'23년 9월 30일)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사용은 가능

-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대상자가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유사서비스 수급'으로 중지 처리하고 사용한 금액을 환수 절차에 따라 반납하면 됩니다.

Q9

노인이나 영유아의 나이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른 '만 나이 통일'로 주민등록상의 출생연월일 기준 노인은 65세 이상, 영유아는 6세 미만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장애인은 신청시점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임신부는 신청 시점에 임신 사실이 확인(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되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10

세대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는 읍·면·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별도세대(단독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세대원 수를 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기존('22년도) 대상자가 세대원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읍·면·동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세대원 감소의 경우 '23.6.27일까지 재신청 가능).

Q11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Q12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것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동·하절기 기간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10개월('23년 7월 ~ '24년 4월)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총 금액이 **38만 1천 8백원**(2인 세대 기준)입니다.

Q13

여름·겨울철 기간동안 총 38만 1천 8백원(2인세대 기준)이면 에너지 비용으로써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써, 특히,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이 많고,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2인 세대 기준으로 **38만 1천 8백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4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 명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더 받거나 여러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총 **279,500원**

* 예2)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총 **381,800원**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총 522,600원

*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 692,700원

Q15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에너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①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②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16

하절기 당겨쓰기는 무엇인가요?

- 하절기 당겨쓰기는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자에 한하여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45천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세대원 수별 총 지원금액은 동일)(공통서식 제1호, 105p).
-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23.5.31. ~ '23.9.30.이며, 하절기 사용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하절기 사용기간 전 '23.5.31. ~ '23.6.27.까지 반드시 해제 신청하셔야 합니다(하절기 사용기간 시작 후 해제 불가).
-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에도 동절기 지원금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중복수급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됩니다(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며,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5. 신청 관련 문의

Q17

에너지바우처는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18

하절기, 동절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 하절기, 동절기 신청기간이 따로 나뉘지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둘 다 포함하여 1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 * 하절기 사용 기간('23.7.1.~'23.9.30.), 동절기 사용 기간('23.10.11.~'24.4.30.)
- 또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상카드로 전기요금 차감방식만 신청 가능하므로 전기 고객센터 입력이 꼭 필요합니다.

Q19

신청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지원금액은 다 같은가요?

- 신청 기간 내('23.5.31.~'23.12.29.) 신청하시면, 세대원 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신청하셔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지원금액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Q20

에너지바우처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이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Q21**몸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죠?**

-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22**신청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 * 전국 읍·면·동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단,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나 가상카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관내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 등록 가능
- 만약,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및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확인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23**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죠?**

-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24**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명을 받아와야 하나요?**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은 대리사실을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5**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신분이 확인 가능한 경우)하거나, 법적 보호자, 후견인,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물카드의 경우 미성년자의 신용카드는 발급은 불가하며, 만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을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
-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카드 발급이 가능한 다른 세대원이 없는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에너지바우처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26**신청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경우에는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본 안내서 114p)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접수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신청인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27**에너지바우처 카드방식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전기)로만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신용·체크카드 등)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Q28**실물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건가요?**

- 실물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카드사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신용등급 및 계좌유무에 따라 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36-37p 참조).
- 만약 체크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8p 참조).

Q29**가상카드를 신청하고 싶은데, 요금고지서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를 통해 정확한 요금차감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차감받기 원하시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 다만, 가상카드 신청자가 요금고지서 증빙자료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내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0**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달라도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주소확인이 안되거나, 고지서 상의 주소지 표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1

세입자인데, 요금고지서가 집주인 명의여도 상관 없나요?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입니다. 즉, 요금고지서상의 주소가 주민등록거주지와 같다면 요금고지서상의 명의(계약자)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Q32

시스템 접수시 고객번호 검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행복이음 시스템內에 각 에너지공급사의 고객번호 DB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 및 누락으로, 정상적인 고객번호임에도 검증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거주지 주소와 고지서 상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를 가장 우선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시스템 상의 고객번호 검증은 참고용입니다).

Q33

1주택 다세대에 거주하는데,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싶어요. 요금고지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개별 세대 단위로 요금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1개의 고지서로 여러 세대가 나눠서 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전기'만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1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기'부분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1개의 계량기를 쓰다가 분리하는 경우, 고객번호의 변동이 있다면 읍·면·동 재신청을 통해 고객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Q34

그룹홈 등 한 거주지에 여러명의 수급자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세대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여러명의 수급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각각의 주민등록표상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지원대상 조건이 된다면 별도 세대별로 에너지바우처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수급자가 그룹홈 거주지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4인 이상 세대로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용 시설 그룹홈 거주자의 주민등록이 각각 되어 있을 경우 그룹홈 운영자가 한국전력에 '수가구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면 각각 전기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용 시설 그룹홈 거주자의 경우 '수가구 적용 신청서' 불필요).

Q35

전기요금고지서 두 개를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둘 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1세대당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위한 고객번호는 1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고지서 중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가상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두 개 모두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Q36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심야전기요금도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야전기보일러가 주 난방 에너지원이라면 심야전기 요금고지서로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업용·상업용·공업용 전기는 난방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해당 전기요금고지서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37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고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거주하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고객번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별 고객번호는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고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으시면 더욱 처리가 빠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는 개별로 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의 경우, 별도 발급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지참하셔야 합니다.

Q38

도시가스(전기) 연체(미납)금으로 공급이 차단된 경우에도 가상 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체(미납)금으로 인해 도시가스 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연체(미납)금 정산 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가능한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 신청하시거나, 실물카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9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는 주 난방 에너지원을 차감하길 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에너지원 가상카드 발급을 위해 다른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시거나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임을 확실히 인지하고도 차감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사용 도시가스 고객번호로 가상카드(요금차감) 지원이 가능합니다.

Q40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이 결정되어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한 날(접수일자 생성)로부터 14일 이내

Q41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시스템상 '완료' 처리), 언제라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 전화·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선택하신 에너지 공급사의 청구일정에 따라 자동 차감됩니다.

* 결정·통지(시스템상 '완료'처리) 이전에도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결정·통지 이후에 결제하셔야 정상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42

에너지바우처 결정 통지서를 대상 세대에 보내야 하나요?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자격 여부 (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Q43

쪽방촌, 고시원, 원룸 등 월세에 난방비(관리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어떤 카드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개별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는 쪽방촌, 고시원, 원룸 등 월세에 전기 및 난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전기요금고지서 및 고객번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되는 1주택 다세대의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대상자가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외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44**경로당, 목욕탕, 사찰 등으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카드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고객센터가 표기된 고지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단,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거주지는 전기 가상카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Q45**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정보변동이
없어도 내년 신규신청을 해야하나요?**

- 행복이음 시스템 내에서 질환자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되는 경우, 전 출입 및 세대원수 변동 등 기타 정보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단, 시스템에서 질환자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신청 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암환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타 질환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 인정)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스템 상에서 확인 불가능하므로 매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Q46**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녀의 학업, 취업 또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부모와 자녀가 모두 받고 있다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신청정보 변경 문의

Q47

이미 1인 세대로 신청했는데, 세대원이 늘어나서 2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신청 이후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사용기간(~'24.4.30.) 내 세대원 증가가 가능합니다.
- 최초 2인 세대로 신청하고 세대원 변경 기간('23.5.31.~6.27.) 이후 대상자 2인이 각각 1인 세대로 세대 분리되는 경우, 대상자 2인 중 한명만 2인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원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각각 1인 세대로 지원 중인 상태에서 합가하는 경우, 한 신청서는 중지 후 나머지 신청서는 2인으로 세대원 증가 신청하여 2인세대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Q48

카드명의자가 별도로 세대독립을 하고, 기존 세대에 장애인 또는 노인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도중에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세대원 모두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 이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23년 6월 27일 내에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세대원 감소를 통해 분리된 세대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3년 12월 29일까지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인위적으로 세대분리 등을 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49

신청 이후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전출입이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우선, 신청하신 읍·면·동에 문의하셔서, 접수된 신청정보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정 이전에 전출입이 발생하신 경우 전출지 시·군·구에서 신청취소를 해야 하며, 새로운 전입지에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50

읍·면·동에서 접수를 완료했는데, 대상자가 정보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만약 시·군·구에서 결정 처리 후에 바우처 송수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에 '결정 취소' 후, '접수반려'를 요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정보변경 후 다시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군·구에서 바우처 송수신이 완료 되었다면 일부 제한된 정보수정만 가능합니다.(24p 정보변경 부문 참조)

Q51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 하나요?

-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읍면동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 하절기 사용기간 중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기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중지되어 있을 경우, 2024년도 사업에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Q52

실물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카드명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실물카드는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카드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사망 사실이 행복이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대상자 사망 시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한 후, 재신청한 세대원이 카드 발급처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시어 국민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24p 정보수정 : 대상자 변경 부문 참고).

-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53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바우처 대상자가 사망했습니다. 요금차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정보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대상자 사망 시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24p 정보변경 부문 참조).

Q54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하나요?

- 가상카드 대상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 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전입지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번호가 동일하여도 재신청 필요)
- 가상카드 재신청의 경우에는, 전입지의 고객번호를 증빙할 요금고지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관내 에너지 공급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출입으로 인한 재신청시에는 대상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55**2인 이상 세대에서 대상자만 전출했을 경우 잔여 세대원이 재신청 할 수 있나요?**

- 2인 이상 세대에서 대상자만 전출했을 경우 ① 대상자가 전입지에서 재신청(잔여 세대원은 신청 불가) 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하여 2인으로 재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의 경우 수급자인 잔여 세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전출한 대상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2인 이상 세대에서 대상자만 전출했다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원의 대상자 변경 재신청은 세대원의 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①잔여 세대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바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단(콜센터 또는 지역에너지복지실 문의)에 문의하여 중지 코드를 사망 코드로 변경한 이후 대상자 변경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세대에서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잔여 세대원이 전출한 경우 대상자 변경 재신청은 세대원의 현재 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Q56**실물(가상)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가상(실물)카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실물(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가상(실물)카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정보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 당일 실물카드 사용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 1~2일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57**'22년도 대상자는 '23년도에는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출입한 경우는 어떡하죠?**

- 전년도 신청 정보와 비교하여 전출입, 사망 등의 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대상자가 '23년도 사업시행 전('23.5월)에 전출입이 발생하였다면,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신규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신청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23.6.27일 이후에는 세대원 감소 재신청은 불가

- '22년도 사업 기간 중에 전출입이 발생하여 재신청을 완료한 경우 그 정보가 '23년도 신청 시점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23년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자동 신청됩니다.

Q58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중에 대상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중에 대상자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상자가 수급자로 다시 책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 중에 수급자에 없다면 다음 연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Q59

읍·면·동 분동 시에도 주소 변동으로 보아 자동중지가 되는지?

- 대상자의 주민등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동중지 되지 않습니다.
- 읍·면·동의 신설, 분동, 통합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에너지공단 업무포털 ID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 관련 문의

Q60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이며 동절기는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전기)로만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하절기),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동절기)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차감이 이뤄지며,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각 카드방식별로 사용기간이 지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등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Q61

하절기 사용 기간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 기간('23.7.1.~'23.9.30)동안 하절기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과 함께 겨울철 난방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예) 2인 세대 지원 금액 200,200원 : 하절기 3,000원 사용 → 동절기 197,200원 사용 가능

Q6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차감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63**실물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실물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시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 특히, 등유 결제시 카드결제 단말기나 포스 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거나, 해당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64**가상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 또는 지역난방 요금 등이 차감되게 됩니다.
- 대상자는 익월(또는 익익월) 고지서에서 차감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5**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작성한 '대상자(수급자)' 명의의 카드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의의 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실물카드의 경우, 발급을 원하시는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대상자의 여건으로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대신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물카드(국민

행복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더라도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66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분실·손상 등의 사유로 실물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금융기관 및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67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결정처리와 송수신처리를 완료한 당일 저녁 8시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따라서,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 단, 카드수령 방식에 따라,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고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 이후부터 공급사에서 작성되는 고지서에 반영되어 요금차감이 적용됩니다.

Q68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 기존 국민행복카드의 카드 유효기간이 유효하다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카드 외에 별도의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 * 에너지바우처 1차 사업('15년도)에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 후 사용(유효기간이 '20.11월까지인 경우 多)

Q69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 은행발급 카드(BC계열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롯데·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연계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시어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Q70

가상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도 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되나요? 어떻게 카드발급이 된 것을 확인하죠?

- 가상카드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실물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고지서상의 차감내역 또는 해당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센터, 국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등을 통해 가상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1

거동이 불편하여 카드 결제를 하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나 카드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상카드(요금 차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급작스럽게 카드사용이 어려워진다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로 전화(ARS)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 전기요금 전화결제 : 국번 없이 123 (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가능하며 구역 전기사업자(한전을 제외한 전기회사)는 실물카드 사용 불가)
- * 도시가스요금 전화결제 :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이 상이하며, 일부 회사만 ARS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

Q72

요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가면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국민행복카드로는 전기요금 등을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에너지공급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결제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ARS, 온라인, 영업소 방문 등을 통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 한전의 경우 영업소 방문 결제가 불가하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마다 결제방식이 다르므로 각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결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3

등유, LPG, 연탄을 중복해서 구입할 수 있나요?

-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결제 횟수 등에 관계없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자유롭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74

도시가스(전기) 요금 연체금액이 있는데, 가상카드를 신청하면 연체금(체납금)부터 결제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전의 연체금은 정산되지 않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하절기 : '23.7.1.~'23.9.30., 동절기 : '23.10.11.~'24.4.30.) 내에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서만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Q75**실물카드로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결제할 수 없나요?**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5가지 에너지원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물카드는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로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감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주 난방에너지원을 다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76**실물카드로 전기, 도시가스의 부분 결제가 가능한가요?**

- 전기는 공급사가 한전인 경우에만 실물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가능) 전기는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공급사)의 경우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실물카드 결제 불가)
 - * 단,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카드사 : BC)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제 불가합니다.
- 도시가스는 공급사가 고지서를 개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 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 도시가스 회사별로 부분결제에 대한 방침과 결제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Q77**집을 비워 카드를 제때 못 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 카드는 개별로 거주지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회까지 다시 배송이 가능하며, 끝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각 은행, 카드사별 반송센터에서 카드를 관리하오니 각 은행,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보관되지 않으니 유의)

Q78**카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최초 신청·접수 이후 카드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명의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 실물카드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자격변동이 없는 '22년도 실물카드 대상자(기존 대상자)가 세대 內 다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Q79**아파트관리비에서 지역난방요금 중에 급탕비와 난방비 둘 다 차감되는 건가요?**

- 아파트관리비에서의 지역난방요금은 난방비, 급탕비 순으로 차감되며, 둘 다 차감도 가능합니다.

Q80**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물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업무포털 참조) 등에 문의하셔서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실물카드의 경우 시간 단위로 결제 내역이 업무포털에 반영되므로 결제 이후 최소 한 시간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에너지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업무포털 참조) 등에 문의하셔서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가상카드의 경우 공급사에서 청구요청을 한 2일 후 차감 내역이 업무포털에 반영됩니다.
- 또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가상카드를 포함한 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금액)

Q81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데,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이체를 해지해야하나요?

- 자동이체는 유지하시되, 자동결제일 이전에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결제일은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문의)
- * 참고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경우)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시면 편리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결제일을 감안한 카드결제가 불편하신 경우는 가상카드를 신청하시어 요금을 차감 받으시면 됩니다.(요금 차감은 자동이체와 관계 없이 요금이 먼저 차감되고 자동 결제됩니다)

Q82

전기요금 가상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도중에 실물카드 발급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당일 실물카드 사용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 당일 1~2일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83

4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나요?

- 4월 30일 이후의 잔액은 모두 소멸되오니, 기간 내 최대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Q84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한 건가요?

- 일반 가정에서는 조명 등의 전기사용량과 냉·난방용 전기사용량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합니다.

Q85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외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냉·난방 목적에 맞게 구입하셔야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86

농협의 농축협 직영 매장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나요?

- 농축협 직영 매장은 가맹점 등록이 농산물, 농자재, 공산물 및 유류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등록이 유류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결제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구매가 불가능하니 결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Q87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목재펠릿을 구입 가능한가요?

-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연탄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가급적 에너지를 전기로 선택하여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실물카드 발급 후 추후에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88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난방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로 사용 가능한가요?

- 기름(벙커유, 경유 등)보일러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실물카드 발급 후 추후에 예외지급

(환급형바우처)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동절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가능하며, 기름 연료는 가상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Q89

실물카드를 사용하다가 전출입으로 인해 가상카드로 변경 발급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가상카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정보수정'을 위한 재신청을 진행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지' 신청을 우선 진행한 후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Q90

7월부터 사용가능한데, 6월분이 청구된 전기요금은 결제가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1일부터 익년 4월 말까지(동절기)까지 청구, 발행된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되므로, 신청을 일찍 하신 분('23.7월 이전)들은 6월에 사용된 요금(7월 청구)도 차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 단, 각 공급사별로 검침일, 청구일 등이 상이하여, 6월에 신청하셨더라도 7월 고지서부터 차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차감일정은 각 공급사 문의 필요)
- 동절기 사용 기간('23.10.11.~'24.4.30.)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9월분은 10월 11일 이후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4월에 발행된 고지서 납기일이 5월까지인 경우, 실물카드 대상자분들은 4월 30일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91

실물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물카드 사용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물카드는 발급 후, 카드 등록(일반 체크·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드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 전화하여, 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려한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적은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모르실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중지되어 있을 경우에도 실물카드 사용이 제한 됩니다. 읍·면·동에 전화하여 정보수정으로 인한 중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접수→결정·승인을 진행하셔야 실물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Q92

실물카드 카드결제 했는데,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아닌 판매소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 계좌에서 사용금액이 인출됩니다. 해결방법은 ①해당 판매소에서 결제 금액 환불 후(결제 취소),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문의)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재사용, ②에너지바우처가 지원하는 에너지원의 난방에너지를 판매하는 판매소라면, 판매소는 카드사(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여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추후 환불 후 재결제 ③만약 난방에너지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①,②번이 어렵다면 영수증을 보관 후 추후 환급형바우처를 신청(콜센터 (1600-3190) 또는 읍·면·동 문의)할 수 있습니다.

Q93

실물카드로 등유를 구입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로 구입 가능한 유종은 등유입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다른 유종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로 등유 결제시 카드결제단말기나 포스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여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정상 결제됩니다. 유종코드(유종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뜬다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Q94

가상카드 신청했는데, 해당 에너지요금이 전혀 차감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실제 사용한 에너지 요금이 매우 적으며, 다른 복지할인(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혜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에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서는 적게 사용하는 수급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가상카드 신청 정보(공급사명, 고객번호 등)가 잘못된 경우 차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정보 확인하고 정보수정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95

실물카드로 등유 구매시 배달비도 결제 가능한가요?

- 실물카드로 등유 구매 시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합니다.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문의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8. 외국인 관련 문의

Q96

외국인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세대원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이나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관련 내용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업안내서 6p 참조).

Q97

일반 외국인도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만 세대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98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시 외국인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나요?

-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으므로, [서비스 찾기]를 통해 외국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붙임7.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195p) 참고).

Q99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대상세대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세대의 세대원에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수 변경을 통해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24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세대원 증가 가능).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위임장
공통서식 제3호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공통서식 제4호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5호	에너지바우처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6호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5.16.>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재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개시일

신청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주소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대상세대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수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주거형태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해제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 1)	[] 실물카드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동, 호)		
	* 에너지원(택 1)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동, 호)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센터(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4.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한 경우 동절기 이용권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단, 동·하절기 총 이용권금액은 동일),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이용권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를 신청(예정)한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당겨쓰기가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5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세대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발송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고객센터(또는 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에너지이용권 사용내역(바우처 금액)
제공목적	에너지이용권의 가상카드 발급 및 요금차감 업무에 활용
제공받는 자	에너지공급자,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보유기간	5년

■ (가상카드 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 동의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장애인 유무, 임신부 유무, 질환자 유무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업무에 활용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 하절기 결정(적합) [☐] 하절기 결정(부적합)
에너지이용권 ([☐] 동절기 결정(적합) [☐] 동절기 결정(부적합)) 통지서
[☐] 당겨쓰기 결정(적합) [☐] 당겨쓰기 결정(미신청, 부적합)
[☐] 사용중지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 하절기 적합 [☐] 동절기 적합 [☐] 하절기 당겨쓰기 적합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성명	구 분	이용권 금액	카드 종류 (실물/가상)	가상카드 에너지원	이용권 사용기간
	하절기				
	동절기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한 경우 동절기 이용권금액 중 45,000원을 하절기 이용권금액에 당겨 발급
(총 이용권 금액은 동일하며, 하절기 이용권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하절기 부적합 [☐] 동절기 부적합 [☐]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 부적합

부 적 합 사 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격	[☐]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기준
	[☐]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 등유·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그 밖의 사유()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권 사용중지

일 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 사무소 등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서식 제4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06.29.>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예 외 지 급 사 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비용 영수증(고지서) 제출 여부		☐ 제출 ☐ 미제출					
입 금 계 좌 정 보	계 좌 정 보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예금주 구분	☐ 신청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계 좌 확 인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예 외 지 급 신 청 액		이용권 잔액			신청 금액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신청인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5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6.29.>

이 의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이 의 신 청 구 분		☐ 적합/부적합 ☐ 사용중지 ☐ 회수/환수 ☐ 기타 ()					
처 분 이 있 음 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항							
이 의 신 청 취 지 및 사 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공통서식 제6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6.29.>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고 인	성 명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			
부정 사용자 및 사용 에너지	부 정 사 용 자 정 보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에너지공급 사업자	
		성 명 (상 호 명)		연 락 처	
		발 생 지 역	() 시·도	() 시·군·구	
	에 너 지 유 형	[] 전 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 유
			[] LPG	[] 연 탄	[] 기 타()
부 정 사 용 내 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	---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위임장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재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개시일

신청인(대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01200-1234567	자택전화	052-000-0000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대상세대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수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본인	홍길동	501200-1234567	동거	031-260-4333
	조손	홍기리	100200-3456789	동거	031-260-4333

주거형태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876542, 전기 회사명: 한국전력공사) (105 동, 112 호)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해제
-----	--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 1)	☒ 실물카드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123456, 도시가스 회사명: 00도시가스) (105동, 112호)
	* 에너지원(택 1)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동, 호)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 []재신청)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센터(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4.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신청인(대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한 경우 동절기 이용권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단, 동·하절기 총 이용권금액은 동일),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이용권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를 신청(예정)한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당겨쓰기가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5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세대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발송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가상카드 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고객센터(또는 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에너지이용권 사용내역(바우처 금액)
제공목적	에너지이용권의 가상카드 발급 및 요금차감 업무에 활용
제공받는 자	에너지공급자,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장애인 유무, 임신부 유무, 질환자 유무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업무에 활용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신청인(대리인): 홍길동 (서홍길동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재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개시일

신청인 (대상자)	성명	①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성명 기입 (대리인 성명 아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대리인 주민번호 아님)	자택전화	③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의 정보 입력(전화번호는 돌중 하나는 반드시 기입) (없는 경우, 대리인 또는 가족의 연락처 입력 가능)
	주소	④ 바우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기입 (대리인의 주소 아님)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⑤ 대상자에 해당되는 급여종류에 체크(√)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대상세대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 []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⑥ 대상자 세대원 중 해당하는 세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세대원수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⑦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에 체크()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⑧ 대상자 본인도 포함하여 작성해야함.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정보를 입력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거형태	[] 다세대 · 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아파트 · 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연립주택 · 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상업시설(상가 · 공장 · 비닐하우스 등) [] 숙박시설(여인숙 등)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종교 · 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⑨ 해당하는 주거형태에 체크,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를 경우,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체크()
------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해제 ⑩ 하절기엔 전기요금이 차감되므로 전기 고객번호 필수 입력(고시원, 쪽방촌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⑪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한 경우 동절기 이용권금액 중 45,000원을 하절기 이용권금액에 당겨 발급 (총 이용권 금액은 동일하며 하절기 이용권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 1)	[] 실물카드	⑫ 원하는 카드 방식에 체크 (중복체크 불가). 단, 가상카드 신청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해야함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동, 호)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동, 호) * 에너지원(택 1) ⑬ 가상카드 선택시에만 한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고객번호 및 회사명 입력(관리소가 존재하는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를 반드시 기입)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 []재신청)합니다.

⑭ 신청유형(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을 선택하고, 작성일자 및 성명과 서명을 기입

“※” 표기(음영표기)된 곳은 필수 작성 항목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센터(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4.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가능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반드시 성명 및 서명 기재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한 경우 동절기 이용권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단, 동·하절기 총 이용권금액은 동일),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이용권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를 신청(예정)한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당겨쓰기가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5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세대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발송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반드시 '동의'에 체크 필요**

■ (가상카드 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고객센터(또는 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에너지이용권 사용내역(비우체 금액)
제공목적	에너지이용권의 가상카드 발급 및 요금차감 업무에 활용
제공받는 자	에너지공급자,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반드시 '동의'에 체크 필요**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장애인 유무, 임신부 유무, 질환자 유무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업무에 활용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후 체크**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후 체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반드시 성명 및 서명 기재**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 임 장 (작성에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501200-1234567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000

전화번호: 010-0000-0000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동길

주민등록번호: 700100-1234567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아파트 501호

전화번호: 010-0000-4166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5월 31일

위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전기	01	한국전력공사	주관기관
전기	02	대성산업(전기)	
전기	03	대성에너지(전기)	
전기	04	부산정관에너지(전기)	
전기	05	삼천리(전기)	
전기	07	JB(전기)	(舊)중부도시가스(전기)
전기	09	CNCITY에너지(전기)	(舊)충남도시가스(전기)
전기	11	한국지역난방공사(전기)	
전기	12	주택관리공단(전기)	
도시가스	21	귀뚜라미에너지	
도시가스	22	강원도시가스	
도시가스	23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24	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	25	군산도시가스	
도시가스	26	대륜E&S	
도시가스	27	대성에너지(도시가스)	
도시가스	28	대화도시가스	
도시가스	29	목포도시가스	
도시가스	30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31	삼천리(도시가스)	
도시가스	32	서라벌도시가스	
도시가스	33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34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35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36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도시가스	37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도시가스	38	에스코	
도시가스	39	인천도시가스	
도시가스	40	전남도시가스	
도시가스	41	전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2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43	JB(도시가스)	(舊)중부도시가스(도시가스)
도시가스	44	지에스이	
도시가스	45	참빛도시가스	
도시가스	46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도시가스	47	참빛원주도시가스	
도시가스	48	참빛충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9	CNCITY에너지(도시가스)	(舊)충남도시가스(도시가스)
도시가스	50	충청에너지서비스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도시가스	51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2	(주)해양에너지	
도시가스	53	제주도시가스	
도시가스	54	주택관리공단(도시가스)	
도시가스	55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지역난방	60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주관기관
지역난방	61	DS과워	
지역난방	62	GS과워	
지역난방	63	LH공사	
지역난방	64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66	내포그린에너지	
지역난방	67	대구그린과워	
지역난방	68	대륜발전	별내에너지와 합병
지역난방	69	대성에너지(지역난방)	
지역난방	70	대전열병합발전	
지역난방	71	대성산업(지역난방)	
지역난방	72	무림과워텍	
지역난방	73	미래엔인천에너지	
지역난방	75	부산시청	
지역난방	76	부산정관에너지(지역난방)	
지역난방	77	삼천리(지역난방)	
지역난방	78	수완에너지	
지역난방	79	안산도시개발	
지역난방	80	나래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81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	82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	83	전북집단에너지	
지역난방	85	JB(지역난방)	(舊)중부도시가스(지역난방)
지역난방	87	청라에너지	
지역난방	88	CNCITY에너지(지역난방)	(舊)충남도시가스(지역난방)
지역난방	91	평택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92	포스코 O&M	
지역난방	93	한국CES	
지역난방	94	휴세스	
지역난방	95	주택관리공단(지역난방)	

붙임4
에너지 공급사별 카드 납부 방식 / 고객센터 확인 방법

* 공급사코드 01~12(전기), 21~55(도시가스), 60~95(지역난방), 공급사 사정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 (2023. 03월 기준)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01	한국전력공사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02	대성산업(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3	대성에너지(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4	부산정관에너지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5	삼천리(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07	JB(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앞장 우측상단 또는 고지서 중앙우측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9	CNCITY에너지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11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12	주택관리공단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관리비 고지서 우측 상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21	귀뚜라미에너지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2	강원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 번호 불가, 방문결제 본사에서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3	경남에너지	BC	○	○	○	○	‘고객번호’ 2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4	경동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납부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5	군산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수용가번호 및 지로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26	대륜E&S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지로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7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에 “사용계약번호” 10자리 숫자 (납부자번호도 동일한 번호임)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8	대화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우측상단에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9	목포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앞장 우측상단 또는 고지서 중앙 왼쪽상단에 “고객번호” 13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0	부산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31	삼천리(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적색 박스로 되어 있는 “납부자번호” 9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2	서라벌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3	서울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 “사용계약번호” 6으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1로 시작하는 고객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4	미래엔서해에너지	BC	○	○	○	○	고지서 우측 “납부자번호” 13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5	대성청정에너지	BC	○	-	○	○	고지서 좌측하단 가운데 “사용계약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36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BC	○	○	○	○	고지서 하단 좌측중앙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7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BC	○	○	○	○	고지서 하단 좌측중앙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8	에스코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10자리 숫자 (금융기관용 고지서의 경우, 우측중앙에 “전자납부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9	인천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0	전남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 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41	전북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5로 시작하는 “고객납부번호” 10자리 숫자 (세대번호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2	전북에너지서비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3	JB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앞장의 중앙에 “납부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4	지에스이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9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5	참빛도시가스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고지서 상단 우측 등 고지서내 3군데 표기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46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7	참빛원주도시가스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8	참빛충북도시가스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9	CNCITY에너지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우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0	충청에너지서비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 불가, 1 또는 2로 시작하는 8자리)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51	코원에너지서비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 납입자번호 ”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 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2	(주)해양에너지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 고객번호 ” 10자리 숫자 (100-****-****, 1로 시작하는 10자리)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3	제주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우측상단에 “ 고객납부번호 ”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4	주택관리공단 (도시가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관리비 고지서 우측 상단 “ 고객번호 ” 6자리 숫자	
55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BC	○	-	○	○	“ 고객번호 ”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60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 고객번호 ” 8자리 숫자	
61	DS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 고객번호 ” 5자리 또는 6자리 숫자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62	GS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5자리 숫자	
63	LH공사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64	서울에너지공사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하단에 “고객번호” 7자리 숫자	
66	내포그린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1자리 숫자	
67	대구그린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68	대륜발전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69	대성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0	대전열병합발전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71	대성산업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2	무림파워텍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3자리 숫자	
73	미래엔인천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5	부산시청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76	부산정관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77	삼천리(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78	수완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9	안산도시개발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사용자번호” 9자리 숫자 (고지서 하단 '8'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80	나래에너지서비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81	인천공항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7자리숫자 ('IAE'로 시작)	
82	인천종합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83	전북집단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4자리 숫자	
85	JB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앞장 우측상단 또는 고지서 중앙우측 “고객번호”8자리숫자	
87	청라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사용자번호)” 12자리 숫자 고지서 중앙의 사용자 현황, 고지서 하단 지로번호 아래	
88	CNCITY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91	평택에너지서비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92	포스코 O&M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3자리 숫자	
93	한국CES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 "사용자명(코드)" 6자리	

공급사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94	휴세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95	주택관리공단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관리비 고지서 우측 상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너지법 [법률 제19000호, 2022.10.18, 일부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35호, 2023.1.17, 일부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5호, 2022.11.21, 일부개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2. 10. 18.>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 다. 장애인 증명서 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	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 ~ 제20조 (생략)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에 위탁할 수 있다.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2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 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 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 (V306은 제외)	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나.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다.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라.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마.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펔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0/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 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올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측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쉬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피질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카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텐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노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윌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젓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IV	E75.1	V117
	GM ₁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₃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라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벤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혈러증후군	E76.0	V117
	혈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리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III[거짓혈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II[I -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I]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혈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테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라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셴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셴]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툼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츠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먼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먼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퇴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홍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처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작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노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췌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노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 [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덴디-위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I 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Q23.4	V14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웨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귀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엘브라이트(-맥균)(-스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윈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앵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최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월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 ~ 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폐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폐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붕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불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6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7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목 차



1. 에너지바우처 업무처리 순서 P5
2. 에너지바우처 2023년 등급변경 추가사항 및 업무 화면 변경 사항 P6
3.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간편 매뉴얼 P7
4.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업무 별 처리 순서 P8
5. 신청구분별 변경 선택 항목 상세 설명 P8~9
6. [공통] 행복이음 로그인 P10
 - 로그인 P11
 - 로그인 후 첫 페이지 P11
 - 바우처 메뉴 선택 화면 및 신청 기간 P12
7. 신청,접수 - 바우처 홈(읍면동) P13
 - 바우처 홈(읍면동) P14
 - 서비스 찾기 P15~16
 - 바우처 신청 - 신청 화면 P17~21
 - 바우처 신청 - "소득/등급"영역 P22
 - 바우처 신청 - 카드 정보 등록 영역 P23
 - 바우처 신청 - "구비서류" 등록, 서비스 신청 접수 P24~25
8. 대상자 결정 처리(시군구) P26
 - 바우처 대상자 결정 처리 P27
 - 바우처 결정 처리 상세 정보 확인 P28
 -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신청취소, 접수반려, 결정취소 P29
9. 바우처 송수신 관리(시군구) - 대상자 결정 처리 이후 P30
 - 송수신 관리 P31
10. 통지서 발행(읍면동, 시군구) -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P32
 - 통지서발행 P33
11. 중지 신청(읍면동, 시군구) - 정보수정 필요 시 P34
 - 중지신청 P35
12. 바우처 송수신 관리(시군구) - 중지 후 P36
 - 송수신 관리 P37

13. 원스크린 P38

- 바우처 원스크린 P39

14. 바우처 재신청(세대원수 변경, 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등) P40

- 재신청 전 변경 기간 확인 P41
- 재신청 (정보 수정 시 - 중지처리를 하고 진행가능) P42
- 재신청 (정보수정-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P43
- 재신청 (정보수정-세대원수 변경) P44
- 재신청 (정보수정-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P45
- 재신청 (정보수정-대상자 변경) P46
- 재신청 (읍면동 담당자 대상자 변경으로 재신청 시 주의 사항) P47

15. 바우처 신청현황 P49

- 바우처 신청 현황 P50
-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P51

16. 바우처 대상자현황 P52

- 바우처 신청 현황 P53

17. 전달사항 및 결정대기 현황 P54

- 바우처 홈(시군구) P55

18. 이의 신청(읍면동, 시군구) P56

- 이의신청 등록(읍면동, 시군구 가능) P57
- 이의신청 현황(시군구) P58
- 이의신청 결정(시군구만 가능)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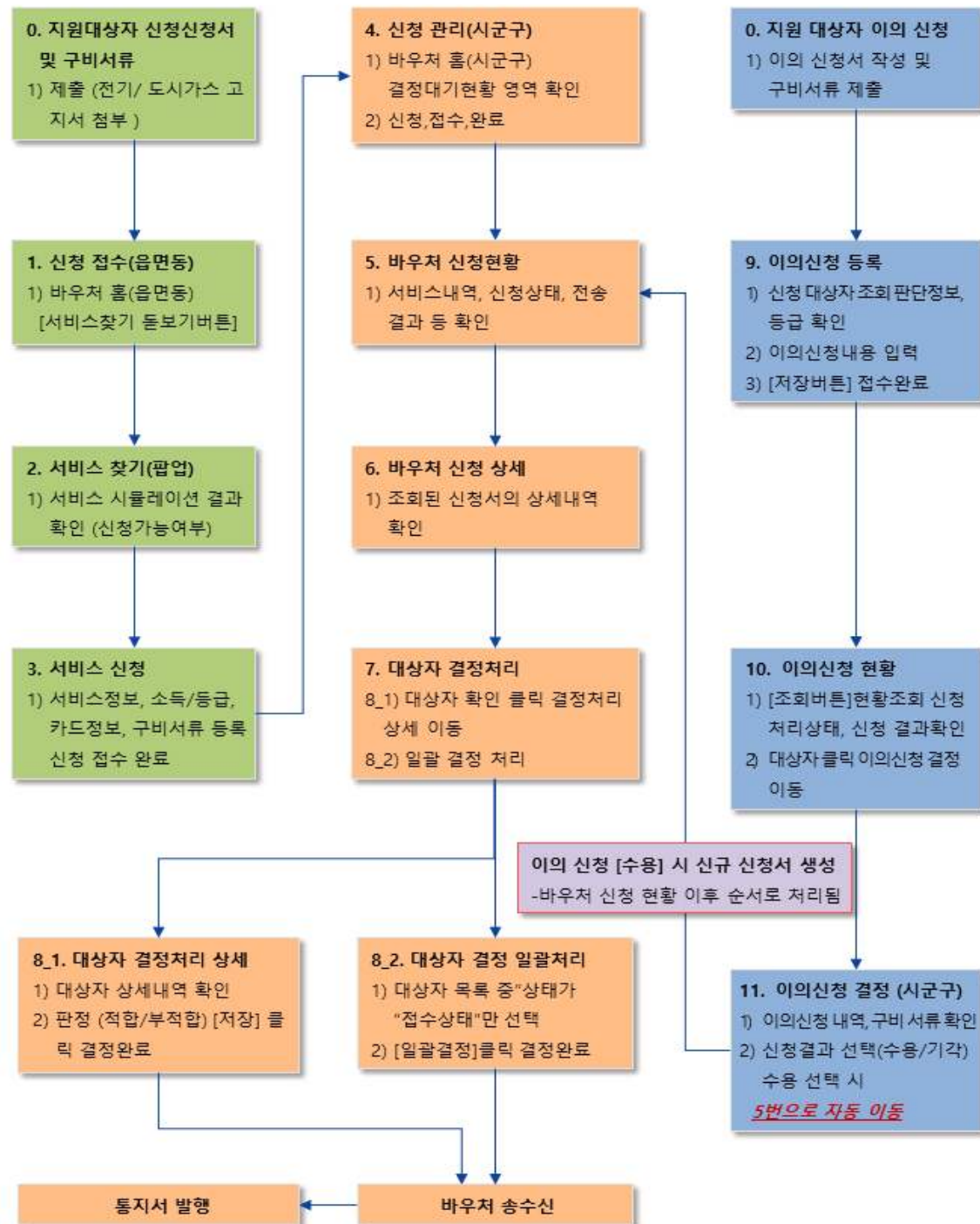
19.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P60

- 온라인신청현황조회 P61~63
- 온라인신청서 접수 P64~67

20. 바우처 변동현황 P68

- 온라인신청현황조회 P69





'23년 4단계 차등 지급 및 세대인원별 지급금액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 前)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1등급)		2인 세대 (2등급)		3인 세대 (3등급)		4인 이상 세대 (4등급)	
'23 년 (계)	하 절 기	279,500	31,300	381,800	46,400	522,600	66,700	692,700	95,200
	동 절 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에너지바우처 2023년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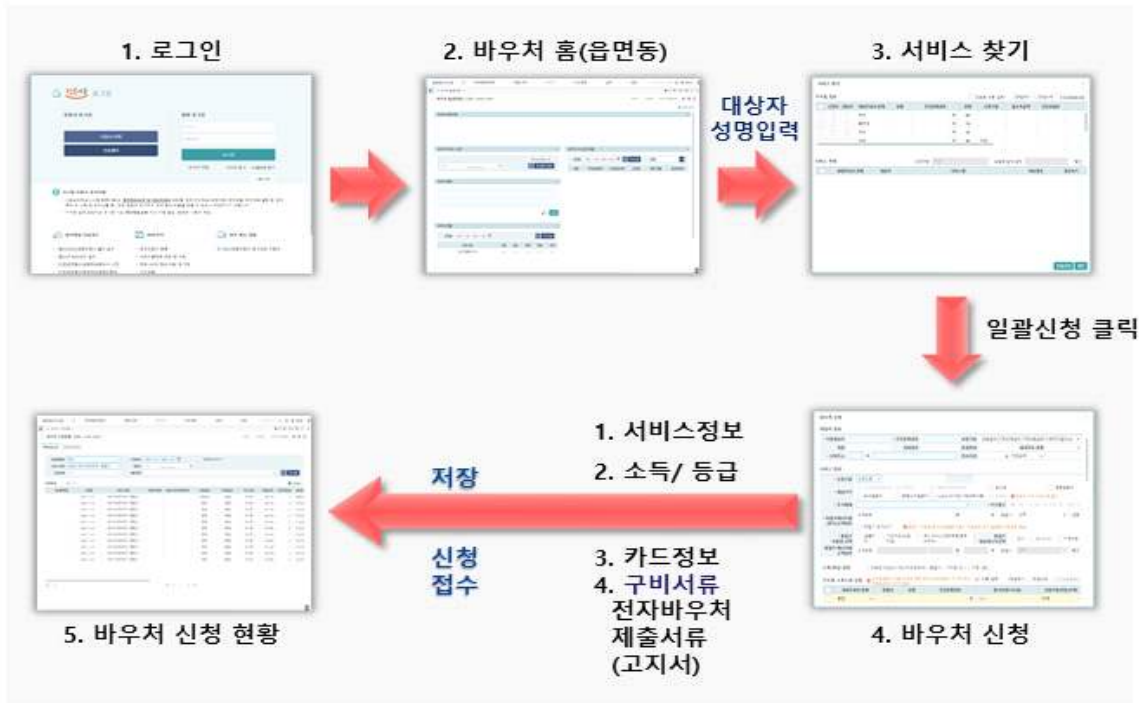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 後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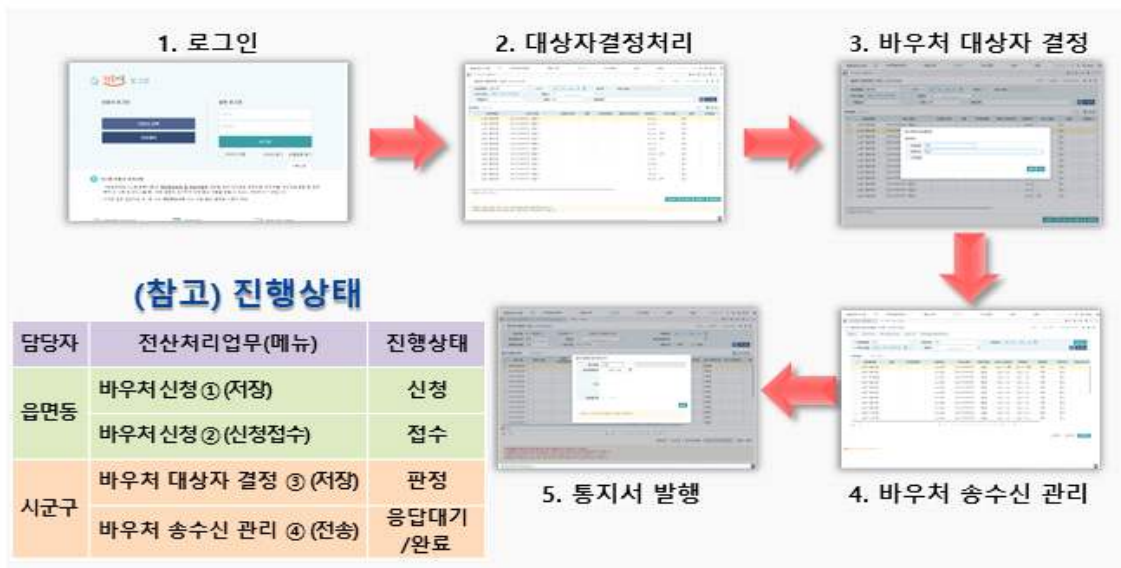
구분		1인 세대 (1등급)		2인 세대 (2등급)		3인 세대 (3등급)		4인 이상 세대 (4등급)	
하 절 기 당 겨 쓰 기	하 절 기	279,500	76,300	381,800	91,400	522,600	111,700	692,700	140,200
	동 절 기		203,200		290,400		410,900		552,500
증가금액		※ 하절기 당겨쓰기 = 등급별 하절기 기본 금액+45,000원							

- 하절기 당겨쓰기란 동절기 지원 중 45,000원을 하절기 지원금에 당겨 발급(총 지원금 동일)하며,
- 동절기 이용권 유사서비스 선택 시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당겨쓰기는 '2023년 6월 28일 이후 변경 불가

읍면동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업무 구분	대상자	업무 순서 및 해당 페이지
✓ 신규신청	1. '23년 신규 대상자 2. 기존 대상자('22년도)중 세대원수 변동, 전출입 가상카드 대상자 등	1. 신청 및 접수 : p13 ~ p25 2. 대상자결정처리 : p26 ~ p29 3. 송수신관리 : p30~P31 4. 통지서발행 : p32~P33
✓ 중지 신청	1.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중지 처리 후 재신청) 2.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 전출입, 사망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중지됨	1. 중지환급신청 : p34 ~ p35 2. 송수신관리 : p36 ~ p37
✓ 신청정보변경에 의한 재신청	1. 정보 수정에 의한 재신청 대상자 • 신청자 중에서 정보수정을 원하는 경우 단, 세대원 감소 및 하절기 당겨쓰기는 정해진 변경기간에만 가능 재신청은 중지 처리이후 진행 가능	1. 원스크린 : p38 ~ P39 2. 재신청(정보수정) 및 접수 : p40 ~ p47 3. 대상자결정처리 : p26 ~ p29 4. 송수신관리 : p30~P31 5. 통지서발행 : p32~P33

신청구분별 변경선택 항목 상세 설명 (1/2)

바우처 신청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 자택주소

서비스 정보

• 신청구분

• 대상가구

• 주거형태

• 하절기에너지원 (전기)고객번호

• 동절기 에너지원 선택

• 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

소독/등급 설정

가구원 소독수준 설정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신청구분(직장/지역)

신청 구분 등의 선택된 항목에 따라 세부 메뉴의 활성화, 비활성화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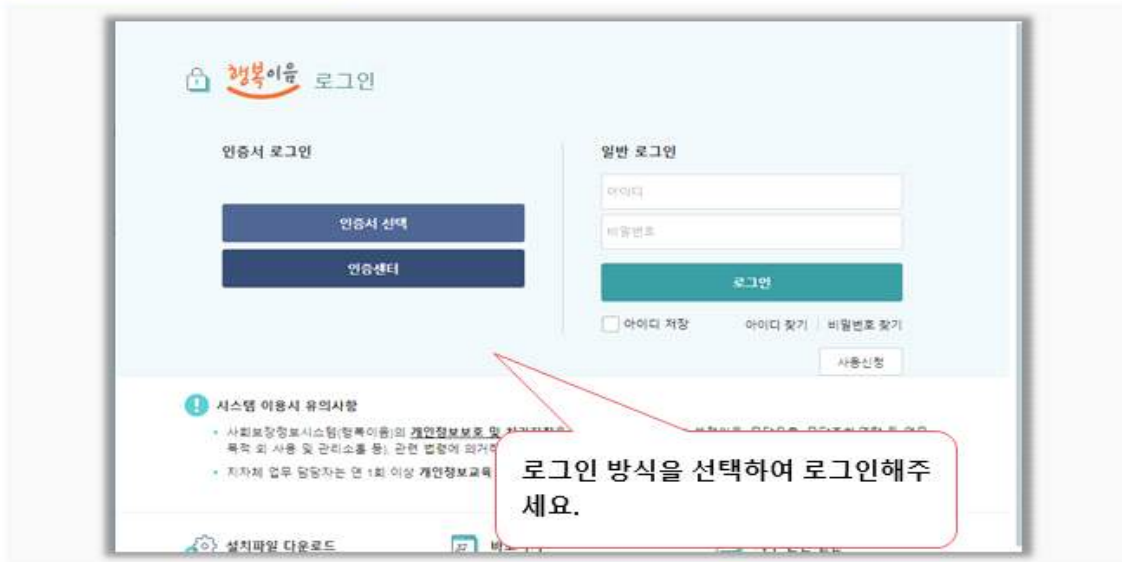
* 다음 페이지 참고

신청구분	세부구분 1	세부구분 2	세부구분 3	관련 항목 및 기능
신청	대상세대			임상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외 임의 선택 불가 (위 세대원특성기준이 시스템상 확인 불가시 구비서류 첨부 필요)
	주거형태			주거형태 활성화
	통절기 이용권선택			통절기 이용권선택 활성화
	통절기 대상에너지 선택			가상 카드일 경우 활성화
	하·통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			통절기 : 가상 카드일 경우 활성화 ※ 하절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 → 고객번호 숫자 0 10개 입력하여 진행
재신청	정보수정	통절기 이용권 선택 (실물→가상)	(이용권 선택 활성화 → 가상카드 클릭 →)	주거형태, 대상에너지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금융사 활성화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통/호수 입력 필수
			다가구다세대주택(1개 주소에 2세대이상 거주)	통/호수 선택 입력
			연립주택·단독주택(1개 주소에 1세대만 거주)	통/호수 선택 입력
			수박시설(여인숙 등)·다목적활용시설(고시원 등)	통/호수 선택 입력
			종교복지시설 등 기타	통/호수 선택 입력
		고객번호		고객번호 활성화
		금융사		금융사 활성화
		통절기 에너지원변경		대상에너지 선택 활성화
		통절기 이용권 선택 (가상→실물)	(이용권 선택 활성화 → 실물카드 클릭 시 →)	대상에너지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금융사 비활성화
		세대원수	증가	23년 5월 31일 ~ 24년 4월 30일까지 변경 가능
			감소	23년 5월 31일 ~ 23년 6월 27일까지 변경 가능 23년 6월 28일부터 세대원 삭제 불가
		하절기 당겨쓰기 (유사서비스 선택 시 하절기 당겨쓰기 비활성화)	적용	23년 5월 31일 ~ 23년 9월 30일까지 변경 가능
			해제	23년 5월 31일 ~ 23년 6월 27일까지 변경 가능 23년 6월 28일부터 변경 불가
		대상자변경		이전대상자명, 이전대상자주민등록번호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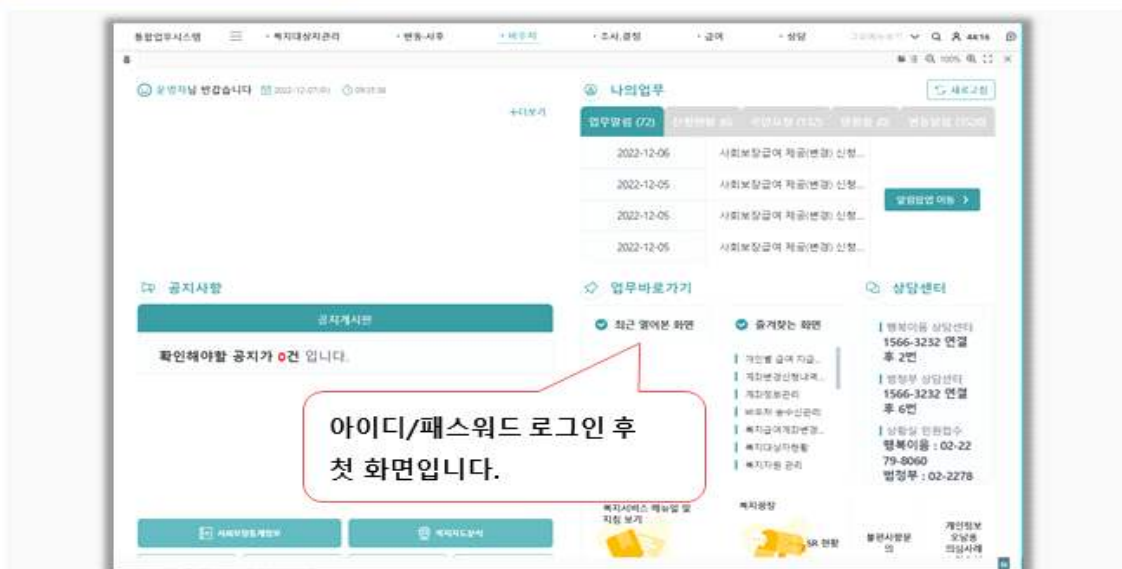
- 세대원 감소 및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의 경우 2023년 6월 28일 이후 변경 불가
-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의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세대원 증가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변경 가능

[공통] 행복이음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첫 페이지



차세대 바우처 메뉴 선택 화면

바우처 메뉴를 클릭합니다.

- [바우처홈(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시 사용하는 메뉴
- [바우처신청현황]**
에너지바우처 신청상태, 전송상태, 신청일자 등을 선택 후 조회
- [통지서 발행(시군구,읍면동)]**
바우처 송수신이 완료된 대상자의 결정통지서 출력이 가능
- [바우처 원스크린]**
대상자의 변경정보내역 및 전입전출 내역을 알려주는 메뉴
- [바우처 대상자 현황]**
대상자의 현재 상태 (중지 또는 지원 중)를 알려주는 메뉴
- [대상자 결정처리 (시군구)]**
시군구에서 결정처리 하는 메뉴
- [바우처송수신 관리 (시군구)]**
결정 처리된 대상자를 전자바우처에 송신하여, 지원금액 생성

신청, 재신청 기간

구분		해당 처리 기간
신규신청 기간		`23년 05월 31일 ~ `23년 12월 29일 까지
재신청 기간	세대원 증가 및 정보 변경	`23년 05월 31일 ~ `24년 04월 30일 까지
	세대원 감소	`23년 05월 31일 ~ `23년 06월 27일 까지
신청 및 재신청 등록 일시 중지 (바우처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23년 06월 28일 ~ `23년 06월 30일 까지 `23년 10월 04일 ~ `23년 10월 06일 까지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상세화면

통합업무시스템
· 복지대상자관리
· 변동-사후

바우처 홈(읍면동) 11000 (UWFB11000M)

바우처 전달사항

바우처 서비스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1-1

1

2

바우처 메모

바우처 현황

신청일 2022-11-06 ~ 2022-12-06

서비스명	신청	접수	완결	완료	오류
장애인활동지원	4	3	3	3	0

상세설명

❖ 바우처 홈(읍면동)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 클릭 시 인적정보조회창에 자동으로 대상자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1-1. 동일한 성명의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팝업에서 신청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화면 기능설명

- [바우처 현황] 서비스 별로 신청, 접수, 완료 건수를 보여줍니다.
- [바우처 메모]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 부서, 개인별로 공지 가능한 메모 기능입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서비스찾기

상세화면

서비스 찾기

가 1 정보

2-1

1-1

1-2

2-3

2-4

2-2

3

신청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신청구분	월소득	건강보험료	보험료조회
☐	☐	본인				지역		0	보장
☐	☐	배우자							검:
☒	☒	조카							의료급여,가

바우처소득수준 수동입력사유

수동입력 사유

건강보험료 미조회에 따른 수동입력

조회된 건강보험료 상이에 따른 수동입력

기타

기타 내용

취소 확인

신청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가능
조카	김기훈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가능		
조카	김기훈	[HWG00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불가능		
조카	김기훈	[990410] 주양육자와함께하는놀이학교서비스	신청불가능		
조카	김기훈	[9903011] 청년마을건강지원사업	신청가능		

결과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완료신청

닫기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 서비스 찾기

❖ 필수확인사항 : 신청 전 대상자 세대원 확인(주민등록등본상 기준) 임의로 세대원 추가 등록 금지

1. [대상자]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만 지정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제 신청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되 (세대원 중 누구나 지정 가능) 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는 대상자를 신청자로 지정 합니다.

2. 1-1. [건강보험료조회] 클릭 시 [1-2]. 건강보험료 항목에 자동으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데이터를 조회되며, [3] 확인 버튼 클릭

※ 건강보험료가 조회 안되는 경우(대부분 수급자)

2-1. [건보료 수동입력] 체크 시

2-2. 팝업창 불러오며, 수동입력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2-3. [신청구분]을 "지역"으로 선택

2-4. 건강보험료 항목에 "0"을 입력 후 [3] 확인 버튼 클릭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서비스찾기

상세화면

[illegibl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 서비스 찾기**

4. 기존 정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④] 같이 예상하여 보여줍니다.
5.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서비스를 선택 [체크]합니다.
6. [예상결과]는 참고용으로 [신청불가능] 표시되더라도 [⑧일괄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7. [보기] 버튼을 클릭 시 대상자등급 판정 시 [7-1판정조건]을 보여줍니다
8. [일괄신청] 을 클릭합니다.

※ 예상결과 참고사항 (세대원 특성 P18 참조)

- 1). 신청가능조건 = (소득/준 필수조건)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의
급여 + 1개 이상 세대원특성이 있는 경우
- 2). 신청불가능 조건
- 1. 소득기준 없는 경우 또는 소득기준 있으나 세대원 특성이 없는 경우
 - 2. (재신청시) 대상자 변경으로 인수자가 소득기준 없는 경우 (대상자 사망 인한 대상자 변경 시 신청 가능)
 - 3. 자동으로 확인 되지 않는 세대원 특성(시스템 내에 사전등록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일괄신청 진행 후 임신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의 한해서 첨부서류 제출하여 신청 가능)
- * 자동으로 자격 확인되지 않아 [신청불가능]으로 표시되어도 첨부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1 배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 외국인)

• 신청인 X X Q

• 주소 Q

전화번호

• 세대주와 관계 조카

휴대전화

• 신청일자 2023-03-03

전자우편 직접입력

에너지바우처지침 :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3명]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보장구분 의료급여, 가정위탁아동,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보호종류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 세대주와 관계 조카

• 자격주소 Q 전자우편 직접입력

2 서비스 정보

• 신청구분 신규신청

3 • 대상가구 노인(만65세이상) 장애인 영유아(만6세미만) 임신부 중증질환자

회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한부모 ☒ 한부모·차별·직접신청 불가

• 주거형태 •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이상

• 하절기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하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가스)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호 층상사 선택 중증

• 동절기 에너지지원 (전기)교액번호 교액번호 동

- ✓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여부가 자동확인이 안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필수로 등록 필요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1)

1. 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는 서비스 찾기 **[팝업화면]**에서 조회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표시 됩니다.
2. 신청구분은 **(신규신청 시)** 신규신청을 선택합니다.
3. 자동으로 선택된 항목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의 경우는 체크 **(V)**하고 증빙서류(P26참고)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3-1. 자동선택 되지 않는 항목을 선택 시 세대원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특성 자동체크 항목

- ①. 노인, ②. 장애인,
③. 영유아, ④. 한부모

세대원특성이 자동 체크되지 않는 항목

- ①. 임산부, ②. 중증질환자,
③. 희귀질환자,
④. 중증난치질환자
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 단, 대상자 또는 세대원이 자동 체크 항목에 관련하여 행복이음 시스템 내에 다른 서비스에서 해택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 체크되며, 자동 체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 체크되어 보여진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함(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1. 아파트 · 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2. 다가구주택(3층이하) · 다세대주택(4층이하)
3. 연립주택 · 빌라(4층이하), 단독주택
4. 상업시설(상가 · 공장 · 비닐하우스 등)
5. 숙박시설(여인숙 등)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촌
6. 종교 · 복지시설

6. 주거형태 항목

에너지바우처지원 [...]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

· 자격

서비스 정보

· 주거형태

· 하절기에너지원 (전기)고객번호

· 동절기 에너지원 선택

· 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

· 가구원수

· 신청구분(직장/지역)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본인부

4-1

메시지팝업 타이틀명

[숙박시설(여인숙 등)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촌] 선택시 하절기 고객번호는 입력이 불가하며, 동절기 이용권은 실물카드로 지정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2)

4. 주거형태는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에너지원 고객번호]에 등, 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4-1. 메시지팝업 문구는 '23.04.12일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단, 주거형태 **5번 [숙박시설(여인숙 등)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촌]** 선택 시 [하절기에너지원고객번호] 입력 할 수 없게 되며, [동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는 실물카드로 자동 체크 됩니다. 4-1과 같이 알림 팝업이 열리게 됩니다.
- A. 등록된 **신청지 주소**에 따라 도시가스, 지역 난방은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공급사명만** 선택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만 해당**)
- ※ 단, 12개 전기공급사 및 도시가스(54-주택관리공단), 지역난방(95-주택관리공단)지역과 상관없이 항상 표시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 외국인)

* 신청연도 X Q
* 주소 Q

전화번호
* 세대주와 관계 조카
* 신청일자 2023-03-03
전자우편 직접입력

에너지바우처지침 :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3명]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영문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장구분 의료급여, 가정위탁아동,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지원 보조금
세대주와 관계 조카
전자우편 직접입력

서비스 정보

* 신청구분 신규신청
* 대상가구 ☐ 노인(만65세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6세미만) ☐ 임신부 ☐ 중증질환자
☐ 최위급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전부모 ☐ 원부로 차액 지원신청 불가
* 주거형태 * 가구원수 1명 2명 3명
* 하절기 에너지용량 (전기) 고객번호 동 호 선택
☐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지원금 총 43,000원을 하절기 지원금액에 장려 없음 (총 지원금 총 87,000원)
* 동절기 이용권 선택 ☐ 실물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 유사서비스(연한무통용 바우처)
동절기 에너지용량 고객번호 동 호 선택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소득/등급 설정 [(T1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가구원 수(3), 직장, 0등]

가구원 소득순서 상점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거(어떻게사유)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1								
2								
3								
4								
5								
6								
7								
8								
9								
10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3)

❖ [7]번 가상 카드 선택 시에만 동절기 대상에너지선택, 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가 활성화 됩니다.

5. 하절기 에너지원은 전기만 사용함으로 해당 고객번호, 동, 호수 입력 후 해당 공급사를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는 숫자 '0' 10개 입력하여 신청 진행

5-1. 하절기 당겨쓰기란 등절기 지원금 중 45,000원을 하절기 지원금에 당겨 발급(총 지원금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P7참조)

5-2. 하절기 당겨쓰기 선택 후 [검증] 버튼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 합니다.

- 입력한 고객번호에 해당하는 고객주소가 없더라도 고객번호가 정상적인 경우(고지서 등과 일치) 정상 신청 가능

6. 하절기 에너지원 등, 호수 입력 시 자동으로 동절기 등, 호수 자동 입력 됩니다.

7. 동절기 이용권선택은 실물카드, 가상카드, 유사서비스 중에 선택합니다. (유사서비스 상세설명 P21 참조)
(조각형태와 관계없이 실물카드, 가상카드 선택 가능)

※ 단 에너지비용이 관리비 형태로 청구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물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 외국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 관계

신청일자

휴대전화

신청일자

에너지바우처지침 :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3명

대상자 정보

지원대상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장구분

휴대전화

신청일자

자택주소

신청일자

서비스 정보

신청구분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대상가구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주거형태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하절기에너지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5-1

7-1

7

8

9

신청구분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대상가구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주거형태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하절기에너지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구분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대상가구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주거형태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하절기에너지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상세설명

-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4)
- ❖ [7]번 실물카드, 유사서비스를 선택 시 [8], [9]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7-1. [유사서비스 선택 경우]

대상자 중 동절기에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 있을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서비스 주의사항]

- (1). 하절기 당겨쓰기 우선 선택 후 유사서비스 선택 시 = **팝업창+당겨쓰기 선택 해제+비활성화**
- (2). 유사서비스 우선 선택 시 = **하절기 당겨쓰기 비활성화**
- (3). 실물카드, 가상카드 선택 시 = **하절기 당겨쓰기 활성화**
- (4). '23.06.27일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신청 활성화
- (5). '23.09.30일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 신청 활성화

- 유사서비스 선택 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급별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시작 시 유사서비스 선택한 대상자는 자동 중지되며, 동절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illegibl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5)

8. 동절기 대상에너지선택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하나의 에너지원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8-1. 메시지팝업 문구는 '23.04.12일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동절기 에너지원 고객센터란의 고객센터, 공급사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고지서를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10.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 합니다.
- 입력한 고객센터에 해당하는 고객센터가 없더라도 고객센터가 정상적인 경우(고지서 등과 일치) 정상 신청 가능
 - 행복이음에서 조회되는 고객센터는 참고용이며 고지서, 관리사무소 또는 공급사에 정확한 고객센터 확인 필요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동결기 에너지원
고객번호

소득/등급 설정 [TIE001] 에너지바우처(하·중)

가구원 소득수준 선정 **①** 건강보험료가 다른 경우만 준할 국민연금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	본인	☐	
☐	배우자	☐	
☐	조카	☐	

소득수준 선정

가구원 수

등급설정

대상자	서비스명	제공기간	등급수동입력	바우처등급	바우처차액액	본인부담금
[TIE001] 에너지바우처(하·중결)		20230310 ~ 20230430	☒	3등급	510,900	0

카드정보 []

카드정보등록

국민은행카드 안내문 국민은행카드 조회 기존 카드정보 조회

대상자	서비스명	카드구분	국민은행카드	카드종류	보유여부	카드신청여부	신청카드사	카드발급일\$

판정조건식

결과	등급명	판정조건
부적합	3등급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장애허인) = Y & (에너지바우처7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임산부) = Y & (에너지바우처7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희귀난치성질환자) = Y & (에너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중증질환자) = Y & (에너지바우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중증난치질환환자) = Y & (에너지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한부모) = Y & (에너지바우처7 (에너지바우처신청정부) = 2 & (에너지바우처예산상접속번호) <> N/A & (에너 (자격) = 기초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_한부모) = Y

승용자동차보험료 **②** **판정조건식보기** **③** **소득기준표**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의 "소득/등급"영역 화면**

1. [등급판정] 버튼을 클릭하여 바우처 등급을 확정합니다.
2. [판정조건식보기] 버튼을 클릭 시 대상자등급 판정시의 판정조건을 보여줍니다.
3. [등급수동입력]
 - 세대원 감소 : 세대원 감소 가능 기간 이후에 [재신청] 시 실제 세대원 인원이 변동되더라도 해당년도에는 신청서 기준으로 기존 등급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증가 : '24.04.30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재신청] 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등급수동입력 체크 후 세대원 상황조정하여 재신청 가능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카드정보

카드정보등록

국민청록카드 안내문 / 국민청록카드 조회 / 기존 카드정보 조회

카드발급요청

**카드정보는 별도 입력 X
다음페이지 구비서류로 이동**

카드수령지 직장주소

대상자	서비스명	수령자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우편번호

한글계좌

계좌조회 버튼을 눌러서 한글계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계좌정보 복제

대상자	서비스명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의 카드정보등록 영역 화면

1. [카드 발급 현황] 을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신청여부는 방문 발급으로 표시됩니다.
 - 카드발급은 수급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카드발급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매칭되며, 대상자 및 세대원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 * 가상카드의 경우 카드신청 여부에 미신청으로 표기됩니다.
3. 신청카드사 선택은 불가합니다. (방문발급 원칙)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함(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여부가 자동확인
이 안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필수로 등록 필요
✓ 그 외 구비서류 입력은 선택 사항입니다.

파일 962.00 byte

1 Files, 962.00 byte Added

1 [추가] [삭제] [다운로드]

서류구분	서류명	제출일자	유효일자	대상자	파일명
기타제출서류	기타제출서류	2023-03-09	2026-03-09	3	

소견서
임신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희귀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중증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중증난치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증명 제출 서류

4-1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 4 [저장] 5 [신청 접수]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구비서류"등록 및 신청 접수

1.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건씩만 추가 가능합니다.)
2. (가상카드 에너지요금고지서 등록) [서류구분]에서 [기타제출서류],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를 선택하고 해당 신청 서류를 선택 등록합니다.
- 2-1. (임산부, 질환자 등 관련 구비서류 등록) [서류구분]에서 [기타제출서류], [사실 증명 의료기관진단서]를 선택하고 해당 신청 서류를 선택 등록합니다. (서류구분 p26 참고)
3. [대상자] 항목에서 등록한 구비서류에 관련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4.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신청서는 [바우처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페이지 참조)
- 4-1.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 버튼은 저장 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접수] 클릭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첨부서류

서류 구분	
기타제출서류	에너지바우처신청서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소견서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수 첨부※
	임신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수 첨부※
	희귀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수 첨부※
	중증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수 첨부※
	중증난치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수 첨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증명 제출 서류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수 첨부※

- 기존 시스템에서 (구)행복이음에 포함된 서류는 기타제출서류로 분류되었습니다.
- 기타제출 서류를 선택 후 세부서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서류구분에 서류명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류구분	서류명	제출일자	유효일자	대상자	파일명
기타제출서류	임신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2023-03-09	2026-03-09		

* 발원/주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제출 3년 이내
 * 단가가사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화상 2개월 이내)



시군구

대상자 결정 처리

- 대상자 결정 처리 (적합, 부적합)

신규신청 절차 (2)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상세화면

[illegible]

상세설명

❖ **바우처 결정처리 대상자 조회 화면**

1.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대상자 결정처리] 화면에 접속합니다. [서비스유형]을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하고, 신청일자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태]가 접수인 결정 대상자를 체크(V)후 [일괄결정] 버튼 누릅니다.
3. [바우처대상자일괄결정] 팝업에서 [판정결과]와 [판정비고]의 내용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4. 조회된 결과 중 확인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대상자 결정상세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상세화면

바우처대상자결정

결정처리

1 판정결과 적합 판정비교 정상

기타내용

저장

에너지바우처지원 [영유아(만6세미만), 한부모, 4명이상, 아파트, 오피스텔(5층 이상, 엘리소 존재), 가상카드(요금차감), 도시가스]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보장구분 영유아(만6세미만), 아동수당, 기초급

영문 전화번호 세대주와 관계 자녀

* 자택주소 전자우편 직업입력

서비스 정보

* 신청구분 대상구분 변경선택

* 대상가구 영유아(만6세미만) 임신부 중증질환자

* 주거형태 오피스텔(5층 이상, 엘리소 존재)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한부모 한부모 자녀 직종실태

* 하절기에너지지원 (전기)요금번호 *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이상

* 하절기 에너지권 선택 * 동절기 대상에너지선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동절기 에너지권 * 동절기 에너지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소득/등급 설정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4등급, 가구원 수()

가구원 소득수준 설정 건강보험료가 다음 상주면 건강 보험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연내 1577-1000)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미동거사유)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상세설명

❖ 바우처 결정 처리 화면에서 선택된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1. [바우처 대상자 결정] 화면에서 선택된 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 후, [결정처리] 영역에서 [판정결과], [판정비교]를 선택하고 [저장] 클릭 하면 결정처리가 완료 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상세화면

통합업무시스템 > 복지대상자관리 > 변동·사후 > 바우처 > 조사·결정 > 급여 > 상담

대상자 결정처리 14000 [UW/FB14000M]

관리행동: 월계1종, 신청일자: 2023-11-06~2023-12-06, 대상자: , 서비스상태: , 서비스유형: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장일순서: , 상태: 접수, 메모검색: [조회]

조회결과 (총 13건)

관리행동	서비스유형	신청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합조사장송여부	제출금액	서비스현황	상태	판정결과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03,600	-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48,100	-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78,000	-	접수	3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48,100	중지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48,100	중지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372,100	-	접수	4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78,000	-	접수	3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48,100	중지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78,000	-	접수	3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03,600	-	접수	2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48,100	-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48,100	-	접수	1
노원구 월계1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03,600	중지	접수	2

※ 종합조사결과 미전송 건

신청취소, 접수반려, 결정취소, 장일순서

통합조사요청서 제출 12:00 / 21:00 국민연금공단으로 일괄자료전송 합니다.
첫날밤이음(한글)의 경우 결정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십시오.

상세설명

❖ 신청정보 오류 등 취소 및 반려가 필요한 경우

1.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하고, 신청일자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된 결과 중 취소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정 처리 전에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 시 해당 정보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재신청은 읍면동에서 신규신청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구분은 재신청으로 선택 후 진행)
3. 조회된 결과 중 반려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접수반려] 클릭 - 결정처리 전에만 가능하며, 접수 반려 시 해당 정보를 그대로 유지되며 읍면동 접수직전(저장상태)으로 회귀입니다.
4. [결정취소]는 결정 직후, 바우처 송수신 관리메뉴에서 송수신 하기 전에만 가능하며, 결정취소 후, [신청취소] 또는 [접수반려] 가능합니다.
5. 바우처 송수신 이후에는 취소 및 반려가 불가합니다.



경로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상세화면

통합업무시스템 > 복지대상자관리 > 변동사유 > 바우처 > 조사,결정 > 급여 > 상담 > 그외(에너지바우처)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바우처 송수신관리 31000 (JWF831000M)

신청(13) | 신청심사(5) | 중지환급신청(46) | 재검거(2) | 지급환급제외목록(87)

관리대상종류: 전체 | 서비스유형: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 전송구분: 선택 | 대상자: 선택 | 신청일자: 2022-05-25 ~ 2022-12-06

3 [신청] [조회]

4 조회결과 (총 15,096건)

관리대상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송정보	서비스유형	대상자등급	서비스신청일자	판정일자	판정결과	판정구분	판정사유기타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2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2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1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2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1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1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2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4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3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3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1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1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노원구 월계1동			수신성공	에너지바우처(하)	1등급	2022-11-30	2022-11-30	적합	정상	

5 [신청취소] [접수반려] [선택전송]

※ 최초 안의 순서는 자동순 간주

상세설명

❖ 바우처 메뉴에서 송수신관리의 바우처 송수신관리를 선택할 때 나오는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송수신관리]-[바우처 송수신관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신청] 또는 [중지환급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과 [중지환급신청] 탭만 사용합니다.)
 - [신청] 탭: 신청 또는 재신청의 경우, [중지환급신청] 탭: 중지신청의 경우
- 2.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으로 선택, [전송구분]과 [신청일자] 등의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조회된 목록에서 전송이 필요한 대상자를 체크(V)합니다.
- 5. [선택전송]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바우처 금액이 생성됨 (전송이전에는 신청취소, 접수반려 가능)
 - (유의) [전송정보]에서 [수신성공]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성공 후에 통지서 발행 등이 가능

읍면동 · 시군구

통지서 발행

-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 신규신청은 송수신 완료 시 바우처 신청 종료

신규신청 절차 (4)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통지서 발행

상세화면

1

통지서 발행 34200 (JWPA14020M)

2

통지서 발행

3

통지서 발행

4

통지서발행 목록

5

통지서발행

6

통지서발행 에너지바우처

7

통지

8

통지서발행요청

8-1

통지서발행요청

상세설명

❖ 통지서 발행을 진행하는 화면

1. [조회구분] 을 선택합니다.
 2. [보장구분] 를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통지서발행 목록] 화면에서 통지할 항목 체크
 5. [통지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통지서발행 에너지바우처] 팝업창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7. [통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통지서 발송요청] 팝업창에서 저장 혹은 인쇄할 버튼을 클릭합니다.
- 8-1. '23년 4월기준 [일반우편발송저장], [등기우편발송저장] 버튼은 복지부에서 개발 중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음면동

중지처리(중지환급신청)

- 정보수정(재신청) 또는 본인포기 처리를 위한 중지

재신청 절차 (1)

경로 : 바우처 > 대상자 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팝업창)

상세화면

상세설명

❖ 지원 중인 서비스를 중지할 때 사용하는 화면

1. [중지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바우처 중지환급신청등록] 화면이 뜹니다.
3. 검색할 대상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현재 지원중인 서비스 정보가 표시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5. [중지환급신청] 항목을 선택(정보변경(재신청) 또는 중지신청(본인포기))하고 [자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바우처 중지환급신청관리] 화면에서 [조회] 를 클릭하면 중지 신청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망, 전입 중지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자동중지처리 되므로 담당공무원 임의로 중지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중지) 사망신고후 익일 7시35분, 전입신고후 익일 18시5분에 처리 됩니다.
 - 사망신고,전입신고 후 발생 후 2일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시) 주민센터 사망신고일,전입신고일 (6월 6일) → 행복e음 시스템 자동중지적용일 (6월7일) → 6월 8일 재신청 진행



경로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상세화면

상세설명

❖ 중지환급신청의 경우에도 바우처 송수신을 완료하여야 '중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1. [바우처송수신관리]화면에서 [중지환급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2. [전송구분]에서 "미전송" 또는 "전송오류"를 선택하여 전송이 필요한 목록을 불러옵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정보를 조회합니다.
4. [신청구분]이 '중지환급'로 되어있는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5. [선택전송]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바우처 금액이 생성됩니다.

·(유의) [전송정보]에서 "수신성공"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성공 이 되어야 중지처리가 완료됨



경로: 바우처 > 대상자 관리 > 바우처 원스크린

상세화면

상세설명

❖ 대상자의 지원 중인 서비스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대상자 관리]-[바우처원스크린]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대상자 검색]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2. 대상자 상세 내역이 화면에 출력 됩니다.

3. 전입전출 변동 시 전입 전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변경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4-1의 팝업이 나옵니다.

4-1. 기존 대상자 변경정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더블 클릭 시 [바우처 신청상세], [바우처 중지환급신청 등록] 화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음면동

바우처 재신청

- 재신청 (세대원수 변경,
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대상자 변경)

재신청 절차 (4)

-재신청은 중지이후 진행 가능 기간

정보 변경 내용	변경 가능 기간
[세대원] 감소 변경	`23년 06월 27일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변경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 변경	`23년 09월 30일까지
[세대원] 증가 변경	`23년 05월 31일 부터 `24년 04월 30일 까지
이용권 선택 · 실물 → 가상 · 가상 → 실물 · 유사서비스(연탄, 등유)	
[동절기 고객센터/ 공급사/ 에너지원] 변경	
[대상자] 변경*	
[하절기 고객센터] 변경	
[하절기 공급사] 변경	
[주거형태] 변경	

- (자동중지) 사망신고 후 다음날 07시35분, 전입신고 후 다음 날 18시05분 처리
- 23년 06월 28일부터는 [세대원 감소] 변경이 불가
23년 6월 27일 이전까지 변경 후 저장 및 접수 가능
- (대상자 변경)의 경우 변경할 대상자가 소득기준 가지고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
기존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한 변경 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세대원 중 누구라도 변경
이 가능하고 해당년도 사업기간만료일까지 지원이 가능
※ 소득기준이란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자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내국인) ※ 정보변경에 따른 재신청은 중지처리 (35page 참조) 후 진행가능
※ 전입 및 사망은 자동중지 후 재신청 가능 (35page 내용 참조)

신청인 주소: [주소] 세대주와 관계: 본인 신청일자: 2023-03-13 전자우편: [이메일] 직접입력

에너지바우처지원 (노인(만65세 이상), 2명, 다가구주택(3층이하) - 다세대주택(4층이하),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

대상자 정보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번호] 보장구분: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기초노

영문: [영문] 전화번호: [번호] 휴대전화: [번호] 세대주와 관계: 본인 전자우편: [이메일] 직접입력

자택주소: [주소]

서비스 정보

신청구분: 재신청 정보수정: 변경선택 이력확인

대상자 정보변경구분선택

주거형태: 동절기 아플권 선택, 주거 형태, 동절기 고객번호, 동절기 공급사, 세대원 감소, 세대원 증가, 동절기 에너지원 변경, 대상자 변경, 하절기 고객번호, 하절기 공급사, 하절기 당가쓰기

소속/등급 설정

가구원 소속수준: [수준] 세대주와: [세대주와]

신청구분(신청/지역): [신청구분(신청/지역)] 할소득금액: [할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건강보험료(본인부)]

상세설명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의 재신청(정보수정) 화면

❖ 입력오류 등 대상자의 정보를 수정 해야 하는 경우, 중지처리를 진행 (35page 참조)한 후 재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홈(읍면동)]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대상자를 조회 선택 (14~16page참조) 합니다.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세 서비스정보변경 (43~47page 참조)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4. [정보변경구분선택] 변경이 필요한 항목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5번과 같이 항이 해당 항목이 활성화 됩니다.

➢ (23.05.31~24.04.30까지 변경가능 정보)

✓ 하.동절기 고객정보 (고객번호, 동, 호, 공급사, 이용권, 에너지원, 연락처)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illegible]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에너지원 변경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 전입전출로 인한 재신청 경우, [이력확인] 클릭 후 하•동절기정보(A영역)가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새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 3-1. [이용권선택,동절기 고객번호, 공급사, 에너지원변경]를 선택하고, 3-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에너지선택]에서 동절기 에너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선택하고, 에너지고객번호, 공급사 등의 변경정보를 입력한 후 4-1.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정보 변경 시 (P17~P25) 참조
5. [저장]버튼을 클릭 후,
 6.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내국인) ※ 정보변경에 따른 재신청은 중지처리 (35page 참조) 후 진행가능
※ 전입 및 사망은 자동중지 후 재신청 가능 (35page 내용 참조)

신청인: [이름] * 세대주와 관계: 본인 * 신청일자: 2023-03-13

주소: [주소] 전자우편: [이메일] 직접입력

에너지바우처지원 (노인(만65세 이상): 2명, 다가구주택(3종 이하): 다세대주택(4종 이하):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

대상자 정보

지원대상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번호] 보장구분: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기초노

영문: [영문] 전화번호: [번호] 휴대전화: [번호] 세대주와 관계: 본인

자택주소: [주소] 전자우편: [이메일] 직접입력

서비스 정보

1. 신청구분: 재신청 2. 변경선택 3. 이력확인

대상가구: 정보변경구분선택

주거형태: 동절기 아플권 선택, 주거 형태, 동절기 고객번호, 동절기 공급사

하절기에너지지원 (전기): 동절기 에너지 지원금에 따라 월급(월 지원금: 10000원)

2-1. 세대원 감소, 2-2. 세대원 증가

동절기 아플권 선택, 동절기 에너지원 변경, 대상자 변경, 하절기 고객번호, 하절기 공급사, 하절기 당가쓰기

4. 소득/등급 설정, 가구원 소득수준 선택, 세대주와

가공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번호] 동거(이동거사유): [사유] 신청구분(직장/지역): [구분] 월소득금액: [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금액]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세대원 감소 및 증가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2.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 2-1. [세대원 변경]를 선택하고, 2-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4.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 변경시 (P17~P25) 참조
 5. [저장]버튼을 클릭 후,
 6.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 [세대원 감소 및 증가] 시 이전에 신청되었던 세대원은 등본상 현재 시점의 세대원으로 자동변경되어 보여집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내국인)

신청인: [이름] * 세대주와 관계: 본인 * 신청일자: 2023-03-13

* 정보변경에 따른 재신청은 중지처리 (35page 참조) 후 진행가능
* 전입 및 사망은 자동중지 후 재신청 가능 (35page 내용 참조)

에너지바우처지원 [노인(만65세이상), 2명, 다가구주택(3층이하), 다세대주택(4층이하),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

대상자 정보

지원대상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번호] * 보장구분: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기초노

영문: [영문] * 전화번호: [번호] * 세대주와 관계: 본인

자택주소: [주소] * 전자우편: [이메일]

서비스 정보

1. 신청구분: 재신청 2. 변경선택: [변경선택] 3. 이력확인

대상가구: [가구원수] * 가구원수: 1명 * 가구원: [가구원명]

주거형태: [주거형태] * 주거형태: [주거형태]

하절기 (전기) * 하절기 당겨쓰기: [선택] * 하절기 당겨쓰기: [선택]

하절기 당겨쓰기 * 하절기 당겨쓰기: [선택] * 하절기 당겨쓰기: [선택]

소득/등급 설정 [TIE001 에너지] * 소득/등급 설정: [소득/등급 설정]

가구원 소득수준 신청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구분(직장/지역): [신청구분(직장/지역)] * 신청구분(직장/지역): [신청구분(직장/지역)]

할소득금액: [할소득금액] * 할소득금액: [할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건강보험료(본인부)] * 건강보험료(본인부): [건강보험료(본인부)]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하절기 당겨쓰기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3. [변경선택] 클릭합니다.
- 3-1. [하절기 당겨쓰기]를 선택하고, 3-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3-3. 재신청 시 [하절기 당겨쓰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원하지 않는 경우 체크박스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
4.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정보변경시(P17~P25) 참조
5. [저장]버튼을 클릭 후,
6.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변경 기간 : ~'23.6.28까지 변경 가능

✓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 신청 기간 : ~'23.9.30까지 가능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함(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서비스 찾기

가구함 정 1

※ 정보변경에 따른 재신청은 중지처리 (35page 참조) 후 진행가능
 ※ 전입 및 사망은 자동중지 후 재신청 가능 (35page 내용 참조)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신청구분

대상자 정보

서비스 정보 2

3-1

3-2

4-1

4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대상자 변경

1.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변경할 대상자를 [대상자] 항목에서 변경 체크합니다.
 ** (주의) 변경할 대상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함
 ** (주의) 사망중지 변경 시 수급 여부(소득기준)와 상관 없이 변경 가능
 ** (주의) 사망중지 변경 시 사망자가 아닌 변경할 대상자(세대원)으로 조회하여 신청 진행
2.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 3-1. [대상자변경]만 선택하고, 3-2.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 시 4-1. [이전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대상자 정보입력 필요) ※ 추가 정보변경(이용권, 고객번호 등) 시 3번 항목 다시 진행 후 정보변경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정보 변경시(P17~P25) 참조
6. [저장]버튼을 클릭 후,
7.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소속/등급 설정 [TIE001 에너지바우처(학·동결기) , 가구원 수(1 혼합, 0원) 3

가구원 소속수준 선정 ① 건강보험료가 다를 경우엔 건강보험료(주민등록번호)와 일치여부(본인/가족/타인)를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2번 예시

본인
 본인

알림
 ! [소속/등급 설정]구성된 가구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으로
 선택된 가구원이 2명이상입니다. 확인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소속수준 선정

가구원 수 신청구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급설정

대상자	서비스명	제공기간	바우처등급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TIE001] 에너지바우처(학·동결기)		-	선택		

가구원 소속수준 선정 ① 건강보험료가 다를 경우엔 건강보험료(주민등록번호)와 일치여부(본인/가족/타인)를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미동거사유)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2 본인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에너지

수동 입력 [+]할 추가 [-]탈퇴 건강보험료확인

신청구분(직장/지역) 지역

신청구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상세설명

❖ 대상자 변경으로 재신청 시 주의 사항

- ** (주의)변경할 대상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여야 함
- ** (주의)사망중지 변경 시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변경 가능

1. 대상자변경 절차를 진행 후 저장 시 ③ 과 같이 알림 메시지 발생 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은 [2]번과 같이 항목 클릭 시 해당된 가족관계로 변경 가능합니다.
3. [③] 경우 [2번 예시]과 같이 세대원 중 본인 2개로 체크되어 있어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할
 대상자]를 본인 둔 상태에서 다른 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변경하고 대상자 변경된 추가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정보변경) 접수 후

대상자 결정처리 -> 바우처 송수신 관리 -> 통지서 발행
진행은 신규신청 진행과 동일 합니다.

26P~33P 참조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신청 현황

상세화면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현황 (1000) (JWFB13000A)

신청일자: 2023-02-14 ~ 2023-05-14

신청상태: 신청

대상자성명: [검색]

대상자주민등록번호: [검색]

신청등급: [선택]

카드상장: [선택]

제출금액: [선택]

본인부담금: [선택]

생리현상: [선택]

생리현상일: [선택]

보험료총액: [선택]

가구소득한도: [선택]

신청일자	신청상태	대상자성명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신청등급	카드상장	제출금액	본인부담금	생리현상	생리현상일	보험료총액	가구소득한도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319,000	0	수신완료		58,49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19,29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376,000	0	수신완료		17,56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106,35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379,0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13,47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379,0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910,900	0	수신완료		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277,800	0	수신완료		13,750	지각
2023-02-14	신청	김민준	1234567890123	1등급	미상장	910,900	0	수신완료		66,560	준합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현황 조회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 신청현황]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 [신청일자]와 [신청상태] 등을 선택 후 [조회] 클릭하여 바우처 신청현황을 조회합니다.
2.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신청서의 상세보기 메뉴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다음페이지 참조)
3. 신청상태가 "신청"인 경우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설명]

신청 : 읍면동에서 [저장] 클릭 후 신청상태

판정 : 시군구에서 결정한 상태

완료 : 바우처 생성 및 모든 절차 완료 상태(통지서 출력가능)

읍면동 신청취소 : 신청 상태에서 가능

접수 : 읍면동에서[신청접수] 클릭 후 접수상태

응답대기 : 신청정보 송신(시군구) 후, 바우처 생성 대기 상태

신청취소 : 읍면동, 시군구에서 신청을 취소한 상태 (수정 불가)

시군구 신청취소 : 접수상태에서 가능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배우자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 외국인

* 신청인 X Q

* 주소 Q

전화번호

* 세대주와 관계 자녀

* 신청일자 2023-04-07

전자우편 직접입력

에너지바우처지침 : 한부모, 2명, 연립주택·빌라(4층이하), 단독주택, 가상카드(요공차감), 도시가스]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영문

* 주민등록번호

* 보장구분 외로급여부자가족, 가정위탁아동, 조종고

* 자택주소 Q

전화번호

보장구분 세대주와 관계 자녀

전자우편 직접입력

재조회

서비스 정보 대상자] [남은 중차신청이 없습니다. [신청구분 : 신규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재산형 정보우편 변경선택 이력확인

* 대상가구 ☐ 노인(만65세이상) ☐ 장애인 ☐ 공무하(만64세이하) ☐ 임신부 ☐ 중증질환자

* 추가영태 연립주택·빌라(4층이하), 단독주택 ☐ 퇴직금환차 ☐ 종중난자질환차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한부모 ☐ ☐ 연로도 차려 치존선생 불가

* 하절기에너지지원 (전기)고객번호 고객번호 동 조 풍급사 검증

* 동월기 에너지원 ☐ 실용카드 ☒ 가상카드(요공차감) ☐ 유사서비스(연립구름, 통유리바우처)

* 동월기 에너지원 고객번호 동 조 풍급사 확인

* 동월기 대상에너지선택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소득/등급 설정 에너지바우처(하·통월급, 가구원 수(2), 지역, 원]

가구원 소득수준 선정 ☒ 건강보험료가 다음 요율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료금 차액 환산제(연도 1577~1990) ☐ 수동 입력 ☐ 연평균 ☐ 합계 ☐ 건강보험료환산

세대주의 관계	맞벌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기(매등거사용)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	☐	☐					

상세 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조회/수정하는 상세 보기 화면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1. 신청현황의 목록에서 선택한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표시하고 [신청자]/[대상자]를 제외한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저장 상태인 신청서를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상세화면) 화면에서도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3. 신청상태일 경우 [재조회] 버튼 클릭 시 대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분의 재조회가 가능합니다. (ex: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재조회)

※ [재조회] 버튼은 신규 개발된 기능입니다.

- 기존에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도 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저장]단계까지 입력 가능
- 수급자격을 얻은 후 [재조회]버튼을 눌러 수급자격 확인 후 신청 진행

※ 단, 접수 이후에는 정보 수정 하실 수 없으며, 신청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로 : 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대상자현황

상세화면

바우처 대상자현황 21000 (JWPF821000V)

서비스별 대상자수

서비스명	시행건수	서비스명	시행건수	서비스명	시행건수
정수전·냉난방·배수·방과후돌봄서비스	95	장애인 재활공간	45	요양 복지 서비스	118
돌봄특례 학교 서비스	15	노인수용운송교차	1	추가급여(보호자등 지원)	2
정신건강 포털서비스	71	마음정수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121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98

관리현황: 집행2중

대상자: [서비스명]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상태: 지원중

대상자: [선택] [선택] [선택]

지자체공표사업: ☐

대상자목록 (총 331건)

관리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명	등급	신청일자	수액상대	진행상태	전화번호	행도번호	주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3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2등급		지원중	완료			
☐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1등급		지원중	완료			

상시조사 대상자(유일자): ☐

20

1 2 3 4 5 6 7 8 9 10 >

종지신청 변경신청

상세설명

❖ 대상자 현황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대상자관리]-[바우처대상자현황]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서비스명] 을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으로 선택합니다.
2. [상태] 를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자목록] 화면에서 "전체/중지/ '지원 중'인 대상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시군구)**

상세화면

(참고) [결정대기 현황]에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이 안 뜨는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비스 목록이 팝업 되고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을 체크(V)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illegible]

상세 설명

❖ **바우처 홀 (시군구)메인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홈(시군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결정대기 현황]에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의 지원 현황이 신청, 접수, 완료 등으로 표시 됩니다.

2. 결정대기 현황의 신청상태의 건수를 더블 클릭하면 각 상태에 따라 화면이 팝업 됩니다.

* 검색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 접수, 방문조사의뢰, 판정, 완료 건수 더블 클릭 -> [바우처 결정처리] 화면 팝업

➤ 전송오류, 수신오류, 미전송, 수신성공 건수 더블 클릭 -> [바우처 송수신관리]화면 팝업

✓ 기능설명

- **[바우처 전달사항] 현재시간표시 및 이슈가 되는 3가지를 등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대기 현황대상자] 결정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 통계입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신청등록

상세화면

상세설명

❖ 바우처 이의신청 등록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이의신청]-[이의신청등록]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 1. [신청정보]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대상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판정결과 및 등급정보 등의 내역 조회됩니다.
- 2. 신청 대상자의 이의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신청이 저장되고 [신청접수] 버튼을 접수처리가 완료 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현황

상세화면

바우처 이의신청현황 (15000 (JWAFB15000M))

관리행정동: 신청일자: 2023-01-01 ~ 2023-05-22 신청상태:

신청현: 재모집액:

1.

2.

4.

관리행정동	서비스명	신청인성명	신청연주인등록번호	신청일자	이의신청구분	신청처리상태	신청결과	신청종류
				2023-04-25	통급	완료	수용	출판
				2023-05-29	통급	완료	수용	출판

20

상세설명

❖ 바우처 이의신청 현황 확인 화면

1. 조회영역에서 관리행정동과 신청일자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버튼] 을 클릭 합니다.
2. 현재 이의신청 중인 대상자에 대한 현황이 이의신청목록에 표시됩니다.
3. 목록에서 신청처리상태 및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목록의 해당 신청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의신청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처리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기능설명

- **[결정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신청결정

상세화면

상세설명

❖ 바우처 이의신청 결정처리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이의신청]-[바우처이의신청결정]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이전 메뉴인 이의신청 현황의 목록에서 선택한 이의신청 신청자의 등록된 이의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합니다.
2. 신청처리영역에서 "신청결과"를 선택하여 [저장버튼]을 클릭 결정처리를 완료 합니다.

✓ 기능설명

- **이의신청 처리영역에서 신청결과가 "수용처리" 가 되면 신규 신청서가 자동 생성되며 신청현황 메뉴로 이동 됩니다.**



경로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 > 신청연계현황관리

상세화면

상세설명

❖ 온라인신청현황조회

1. 신청서명에서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선택
2. 조회 버튼 클릭하여 신청내역 조회
3. 신청내역 상세보기
 - 목록 더블클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온라인반려처리
 -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신청 항목을 클릭하고 [온라인반려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합니다.
5. 담당자정보관리
 - 담당자 정보관리 팝업화면 생성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화면 오픈 시 팝업 창 자동 생성됩니다.

경로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 > 신청연계현황관리

상세화면

신정연계현황관리 23100 (JWFFZ31000)

시스템 목록 관리

번호	서비스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대표번호	변경이력
☐ 25	에너지바우처				이력
☐ 26	한시금계지출				이력
☐ 27	부드림에(현금)				이력

상세정보 : 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자료를 하시면 담당자가 변경 됩니다.

서비스명: 에너지바우처
 성명: _____
 전화번호: _____ 대표번호: _____
 변경사유: _____

[개인정보수집] [저장]

상세설명

❖ 담당자정보 관리

1. 행정동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선택

- 상세정보의 성명, 전화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합니다.
- 전화번호가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개인정보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연락처 수정 후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주의 사항

※ 온라인신청서의 접수, 반려, 결정 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등록된 담당자의 연락처가 첨부됩니다.

경로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 > 신청연계현황관리

상세화면

[illegibl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현황**

1. 신청서명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선택합니다.
 2. 신청내역 조회
 3. 신청내역 상세보기
- 목록 더블클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주의 사항

※ 온라인신청에서 상세보기창으로 이동 후 저장 버튼 클릭 전까지 바꾸쳐신청현황 > 행복e음 신청(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온라인신청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배우자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 외국인)

*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소		* 세대주와 관계		* 신청일자	2023-02-27
		전자우편			

1 **복지로(혼리인신청)**

에너지바우처지원 : ☐ 한부모 2중 아파트 · 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보장구분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	세대주와 관계
* 자택주소		전자우편			

서비스 정보

* 신청구분	신규신청		
* 대상가구	☐ 노인(만65세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6세미만) ☐ 임신부 ☐ 영장보호대상자 ☐ 차가없음가구 ☐ 영장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가정외박허가)	☐ 한부모 ☒ 한부모와 자립 지원신청 불가	
* 주거형태	아파트 · 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이상
* 하절기에너지지원 (전기)고객번호	고객번호 동 호 공급사	☐ 하절기 당겨쓰기 ☒ 하절기 지원금 총 45,000원을 하절기 지원금에 당겨 발급(한도 지원금 총 45,000원)	
* 하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 실물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 유사서비스(연간구분,동유바우처)	* 하절기 대상에너지신청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하절기 에너지 환	고객번호 동 호 공급사	☐ 확인 ☒ 확인	

소득/환급 설정 : 에너지바우처(하 · 중절기), 가구원 수(2) 중

가구원 소득수준 신청 ☒ 건강보험료가 다음 상환액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세대 보험료(연세 1577~1900) ☐ 수동 입력

☐ 세대주와의 관계 ☐ 맞벌이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동거(비동거사유) ☐ 신청구분(직장/지역)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본인부담)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상세**

- 1. 온라인신청으로 연계된 신청서는 신청일자 우측에 **복지로(온라인 신청)** 문구가 표기됨
- 상세정보의 성명, 전화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전화번호가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개인정보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연락처 수정 후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온라인신청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소득/등급 설정 { 에너지바우처(하·중월기), 가구원 수(2) 중 }

가구원 소득수준 선정 ● 건강보험료가 다음 경우면 본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안내 ☎577-1000)

☐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비동거사유)	1-1 1	☐ 수종 입력	▶ 항목추가	▶ 항목삭제	국민보험료확인
☐	본인	☐		Q	☐ 선택	1	산정구분(직장/지역)			건강보험료(본인부)
☐	자녀	☐		Q	☐ 선택					

소득수준 선정

가구원 수 산정구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급 설정 2 통급신청

대상자	서비스명	제공기간	바우처등급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에너지바우처(하·중월기)	-	선택			

카드정보 { 가상카드(요금차감), 이징구 }

카드정보등록

☐	대상자	서비스명	카드구분	카드발급필요여부	미성년자발급동의서	발급신청일자	카드수령지
☐							

상세 설명

❖ **바우처 신청상세**

1. 산정구분 및 건강보험료가 비어있을 경우, 1-1의 수동입력을 클릭하여 직접 내용 입력
2. 산정구분 및 건강보험료가 입력 완료되었을 경우 **등급판정**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온라인신청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바우처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정보

읍면동주소

주민센터

읍면동전화번호

구비서류

파일

첨가

631.44 KB

1 Files, 631.44 KB Added

추가

삭제

다운로드

서류구분	서류명	제출일자	유효일자	대상자	파일명
기타증명서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전기고지서.jpg

1

2

3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

신청 취소

신청 접수

저장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상세

- 신청취소 버튼 클릭 시 온라인신청서에 대한 반려처리 됩니다.
현재 저장 후에 신청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반려 시 복지로로 반려정보가 연계되며, 민원인에게 SMS 발송됩니다.
- 저장
 - 온라인신청서의 경우 신청접수 전 반드시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 신청접수부터는 기존 방문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접수, 판정 등 진행단계에 따라 민원인에게 SMS자동 발송됩니다.
 - * 복지로로 신청한 대상자만 SMS 발송 됩니다.

※ 주의 사항

※ SMS 발송 시 담당자의 연락처가 같이 첨부되어 발송되므로, 담당자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바우처 > 변동 사후 > 바우처 변동현황

상세화면

비우치 변동원 41000 (JWF84100300)

변동유형별 처리과원할

작목	51 건	장애	35 건	연말	31 건	전송	0 건	사망	0 건	주인등록	0 건
성명	0 건	유사서비스	185 건	장애요청등급	2 건	시설업소자	8 건	매의출입구	2 건	광산신청	22 건
장기도 추가지원	0 건	상동거주	0 건	활동지원 차감	0 건	활동지원 해당명	0 건	활동지원 자격확인	1 건	교정시설업소자	0 건
활동지원차일(가동)	0 건	에너지비무채	1 건								

비처리원할 검색 조건

관리행정종 변동유형 변동일자 처리여부

대상자 검색

비동원할 (0 건)

관리행정종	서비스명	대상자명	주인등록번호	변동유형	변동 전 내용	변동 후 내용	변동일자	처리여부	처리일
	에너지비무채(가동 + 통일가)			에너지비무채 자격확인	[신청자격변동전] 최종급여, 사후서비스	[신청자격변동후] 최종급여, 사후서비스	2023-05-11	처리할됨	

변동 전 내용

변동 후 내용

[신청자격변동전] 자살위험인 부당경감대상자, 기초연금, 기초투거급여, 요양급여 [신청자격변동후] 자살위험인 부당경감대상자, 정부양육발인, 기초연금, 에너지비무채

20 < < > >

비우치원할로그, 통계신청, 변동신청, 검색조건, 처리완료

상세 설명

❖ **바우처 변동현황**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변동 사후]-[바우처 변동현황]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건수 (1건)]를 클릭하여 바우처 변동현황을 조회합니다.

2. 자격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들이 조회되며 변동 전 자격과 변동 후 자격의 확인이 가능

- 변동 전 내용 : 자격 변동 전 자격을 충족하던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 변동 후 내용 : 자격 변동 후 현재 충족하고있는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3. 체크박스에 체크된 대상자들의 처리여부를 처리완료로 수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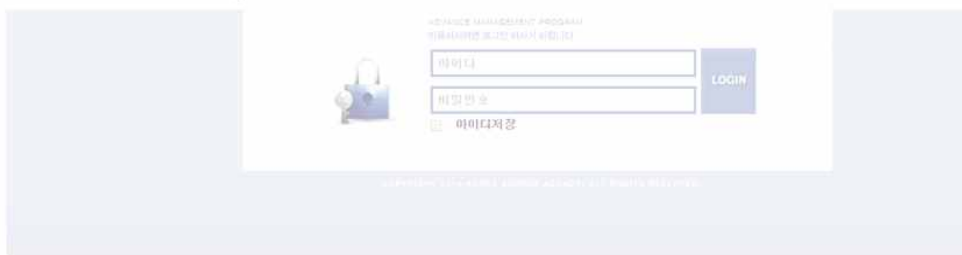
✓ 기능설명

-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없어 [저장]단계까지만 된 신청자 중에서 자격을 취득하면서 신청가능한 상태로 변경된 대상자들이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 변동 전 내용에서는 없던 '에너지바우처'가 변동 후 내용에 추가된 것 확인 가능



업무포털 가이드 (www.energyv.or.kr/work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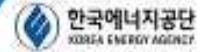
업무포털 페이지



업무 포털 페이지의 주요 기능

- (대상자현황) 에너지바우처대상자에대한상세정보파악가능(신청정보,사용현황등)
- (지자체 공지사항)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공지
- (지자체자료실) 사업안내서,교육자료,신청서식등에너지바우처주요자료확인가능
- (지자체 통계) 지자체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 및 사용률 통계 확인 기능
- (홍보자료) 포스터, 리플렛, 홍보영상 등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확인 가능
- (가맹점현황) 실물카드 결제가 가능한 등유, LPG 등 가맹점 조회 가능
- (환급형바우처 신청) 환급형바우처 신청 및 승인
- (신청대상 확정 조사) 대상자여부확정조사및미신청자조회로 신청독려활용
- (동절기 미사용 조사) 동절기미사용사유조사및미사용자확인하여사용독려활용
- (재신청 대상자) 사망, 전출입 중지된 대상자 조회로 및 재신청 독려 활용
- (가상카드 미사용자) 가상카드 미사용자 확인하여 사용 독려 활용
- (실물카드 미사용 조사) 실물카드 미사용자확인하여 사용 독려 활용
- (에너지바우처플러스) 에너지바우처플러스사업신청및플러스사업대상자관리
- (QnA게시판)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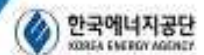
업무포탈 사이트 주의사항



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 업무포탈은 Explorer 9, 10, 11에 최적화되어 있음
- 하위버전의 Explorer로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 참고
 - Explorer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
 - Google chrome을 다운받아 사용
- 업무포탈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연락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업무포탈 주요기능



업무포탈이란?

- 에너지바우처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들이 관내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포탈 사이트
- 업무포탈 주소 : www.energyv.or.kr/workp
- 로그인 ID/비밀번호 :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담당자별 ID 및 비밀번호 제공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ID확인 및 패스워드 초기화 가능

업무포탈 주요기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
 - 지자체별 신청 및 사용률 통계
 - 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사용 현황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 및 승인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

업무포털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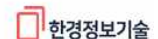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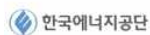


- 위치 : 지자체용 업무포털 접속 페이지 (별도 안내, 문의 : 1600-3190)



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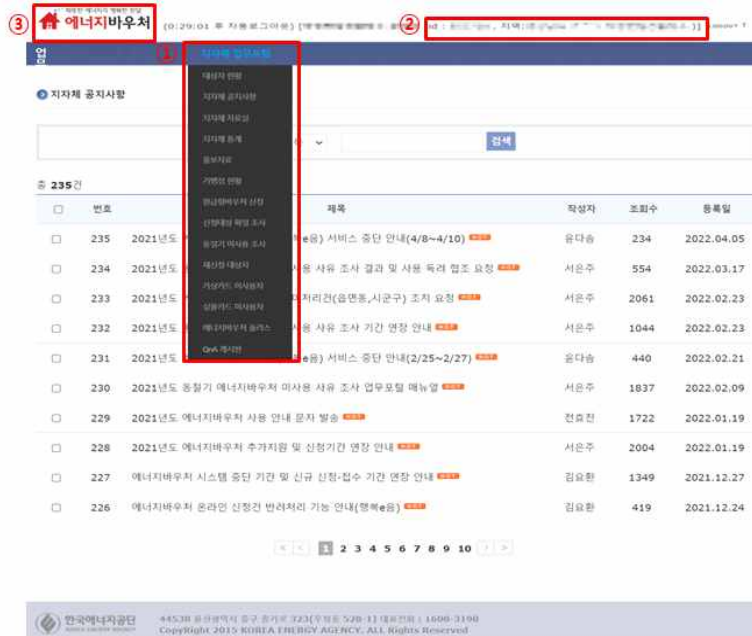
- ❖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초기 비밀번호 로그인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초기 비밀번호가 아닌, 담당자별 수정된 개별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경우, 지자체 공지사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 비밀번호 5회 이상 불일치 에너지공단 담당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해야 합니다.(담당자 본인확인 후, 초기화를 실시합니다)
- ❖ 비밀번호 기간은 3개월 단위로 변경해야 합니다.(보안정책상 특수문자 조합 등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_주요기능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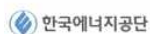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지자체 업무포털 주요 메뉴



상세설명

- ❖ 지자체 공지사항 목록 화면
- ① 지자체 업무포털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업무포털 페이지의 주요 기능"에 대해 나와있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메뉴들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② 로그인 ID를 클릭하면 나의 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③ 로고를 클릭하면 '대상자 현황'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_대상자 현황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대상자 현황(사업년도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025106 주 자통로그아웃) [자차제 업무포털] (id : 관리자, 지역 : 서울특별시, 지역 : 서울특별시) | KENERGY

자차제 업무포털

● 대상자 현황 ①

사업년도	2022년도	이동권종류	전체
대상자명		생년월일	
신청접수번호		자격상태	전체
주소	경남	가게서	
상세주소			

② 엑셀 다운로드

● 11건 <대상자명 클릭하면 이동내역 및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이동권종류	자격상태	승차사유	동일가 에너지원	가구원수	사건구
1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2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3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4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5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6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7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8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9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10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11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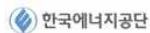
④ 11 >

한국에너지공단
Copyright 2023, KOREA ENERGY AGENCY, All Rights Reserved

상세설명

❖ 대상자 현황 목록 화면
(사업년도 : 2022년도)

- ①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결과가 아래 목록에 조회됩니다.
 - 생년월일: 년도4자리(ex:1992) 혹은 생년월일8자리(ex:19450231)로 입력
 - 신청접수번호: 16자리 모두 입력
 -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선택 가능
 - 상세주소: 전체주소 중 모두 혹은 일부를 입력하여 검색
- ②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한 목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상자명을 클릭하면 해당 대상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페이지숫자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_대상자 현황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대상자 현황 > 대상자 상세 화면

에너지바우처 (025106 주 자통로그아웃) [자차제 업무포털] (id : 관리자, 지역 : 서울특별시, 지역 : 서울특별시) | KENERGY

자차제 업무포털

● 대상자 현황

사업년도	2022년도	이동권종류	전체
대상자명		생년월일	
신청접수번호		자격상태	전체
주소	경남	가게서	
상세주소			

① 대상자 현황

● 11건 <대상자명 클릭하면 이동내역 및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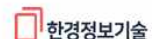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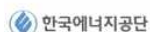
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이동권종류	자격상태	승차사유	동일가 에너지원	가구원수	사건구
1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2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3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4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5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6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7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8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9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10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11	김민준	1992-01-01	일반승차권	승차권	승차권	일반	1	승차권

다음 장에 계속

상세설명

❖ 대상자 현황 상세 조회 화면 (1/2)

- ① 대상자 현황에서, 대상자명을 클릭하면, 대상자의 상세 신청내역 및 사용내역 조회 화면이며 아래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신청정보
 - 대상자정보
 - 가족원 정보
 - 카드발급현황
 - 자격변동내역
 - 에너지바우처 이용금액
 - 현금형바우처 지급내역
 - 전출입지 내역



한경정보기술

 에너지바우처

한경정보기술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_지자체 통계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지자체 통계



(0:29:50 후 자동로그아웃) [주요정보:담당자:윤영, 연락처:010-12345678, 지역:경기도 수원, 기관:시/군/구 환경정보기술센터] | 400000

입

지자체 업무포털

● 지자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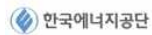
*시도명을 클릭하면 해당 시도의 시군구별 통계가 조회됩니다.

① 서울

②

엑셀 다운로드

지역	사업년도	수입가구수	대당가구수	방급가구수	방급률	악질기 생성액	합질기 생성액	합계 생성액
서울	2015	148,448	148,448	148,448	100.00%	0	37,749,348,348	37,749,348,348
	2016	151,448	151,448	151,448	100.00%	0	38,749,348,348	38,749,348,348
	2017	154,448	154,448	154,448	100.00%	0	39,749,348,348	39,749,348,348
	2018	157,448	157,448	157,448	100.00%	0	40,749,348,348	40,749,348,348
	2019	160,448	160,448	160,448	100.00%	0	41,749,348,348	41,749,348,348
	2020	163,448	163,448	163,448	100.00%	0	42,749,348,348	42,749,348,348
	2021	166,448	166,448	166,448	100.00%	0	43,749,348,348	43,749,348,348
	2015	169,448	169,448	169,448	100.00%	0	44,749,348,348	44,749,348,348
	2016	172,448	172,448	172,448	100.00%	0	45,749,348,348	45,749,348,348
	2017	175,448	175,448	175,448	100.00%	0	46,749,348,348	46,749,348,348
	2018	178,448	178,448	178,448	100.00%	0	47,749,348,348	47,749,348,348
부산	2015	181,448	181,448	181,448	100.00%	0	48,749,348,348	48,749,348,348
	2016	184,448	184,448	184,448	100.00%	0	49,749,348,348	49,749,348,348
	2017	187,448	187,448	187,448	100.00%	0	50,749,348,348	50,749,348,348
	2018	190,448	190,448	190,448	100.00%	0	51,749,348,348	51,749,348,348
	2019	193,448	193,448	193,448	100.00%	0	52,749,348,348	52,749,348,348
	2020	196,448	196,448	196,448	100.00%	0	53,749,348,348	53,749,348,348
	2021	199,448	199,448	199,448	100.00%	0	54,749,348,348	54,749,348,348
	2015	202,448	202,448	202,448	100.00%	0	55,749,348,348	55,749,348,348
	2016	205,448	205,448	205,448	100.00%	0	56,749,348,348	56,749,348,348
	2017	208,448	208,448	208,448	100.00%	0	57,749,348,348	57,749,348,348
	2018	211,448	211,448	211,448	100.00%	0	58,749,348,348	58,749,348,348
대구	2015	214,448	214,448	214,448	100.00%	0	59,749,348,348	59,749,348,348
	2016	217,448	217,448	217,448	100.00%	0	60,749,348,348	60,749,348,348
	2017	220,448	220,448	220,448	100.00%	0	61,749,348,348	61,749,348,348
	2018	223,448	223,448	223,448	100.00%	0	62,749,348,348	62,749,348,348
	2019	226,448	226,448	226,448	100.00%	0	63,749,348,348	63,749,348,348
	2020	229,448	229,448	229,448	100.00%	0	64,749,348,348	64,749,348,348
	2021	232,448	232,448	232,448	100.00%	0	65,749,348,348	65,749,348,348
	2015	235,448	235,448	235,448	100.00%	0	66,749,348,348	66,749,348,348
	2016	238,448	238,448	238,448	100.00%	0	67,749,348,348	67,749,348,348
	2017	241,448	241,448	241,448	100.00%	0	68,749,348,348	68,749,348,348
	2018	244,448	244,448	244,448	100.00%	0	69,749,348,348	69,749,348,348
	2019	247,448	247,448	247,448	100.00%	0	70,749,348,348	70,749,348,348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_지자체 통계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지자체 통계



(0:29:50 후 자동로그아웃) [주요정보:담당자:윤영, 연락처:010-12345678, 지역:경기도 수원, 기관:시/군/구 환경정보기술센터] | 400000

입

지자체 업무포털

● 지자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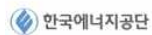
*시도명을 클릭하면 해당 시도의 시군구별 통계가 조회됩니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②

엑셀 다운로드

지역	사업년도	수입가구수	대당가구수	방급가구수	방급률	악질기 생성액	합질기 생성액	합계 생성액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5	148,448	148,448	148,448	100.00%	0	37,749,348,348	37,749,348,348
	2016	151,448	151,448	151,448	100.00%	0	38,749,348,348	38,749,348,348
	2017	154,448	154,448	154,448	100.00%	0	39,749,348,348	39,749,348,348
	2018	157,448	157,448	157,448	100.00%	0	40,749,348,348	40,749,348,348
	2019	160,448	160,448	160,448	100.00%	0	41,749,348,348	41,749,348,348
	2020	163,448	163,448	163,448	100.00%	0	42,749,348,348	42,749,348,348
	2021	166,448	166,448	166,448	100.00%	0	43,749,348,348	43,749,348,348
	2015	169,448	169,448	169,448	100.00%	0	44,749,348,348	44,749,348,348
	2016	172,448	172,448	172,448	100.00%	0	45,749,348,348	45,749,348,348
	2017	175,448	175,448	175,448	100.00%	0	46,749,348,348	46,749,348,348
	2018	178,448	178,448	178,448	100.00%	0	47,749,348,348	47,749,348,348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5	181,448	181,448	181,448	100.00%	0	48,749,348,348	48,749,348,348
	2016	184,448	184,448	184,448	100.00%	0	49,749,348,348	49,749,348,348
	2017	187,448	187,448	187,448	100.00%	0	50,749,348,348	50,749,348,348
	2018	190,448	190,448	190,448	100.00%	0	51,749,348,348	51,749,348,348
	2019	193,448	193,448	193,448	100.00%	0	52,749,348,348	52,749,348,348
	2020	196,448	196,448	196,448	100.00%	0	53,749,348,348	53,749,348,348
	2021	199,448	199,448	199,448	100.00%	0	54,749,348,348	54,749,348,348
	2015	202,448	202,448	202,448	100.00%	0	55,749,348,348	55,749,348,348
	2016	205,448	205,448	205,448	100.00%	0	56,749,348,348	56,749,348,348
	2017	208,448	208,448	208,448	100.00%	0	57,749,348,348	57,749,348,348
	2018	211,448	211,448	211,448	100.00%	0	58,749,348,348	58,749,348,348
	2019	214,448	214,448	214,448	100.00%	0	59,749,348,348	59,749,348,348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가맹점 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업관리시스템 (0:29:51 후 자동로그아웃) [한글/영어/로그아웃] [문의/안내, 지역, 자료/문의] [회원/회원관리/회원탈퇴] 100007

에너지사업관리시스템

자세한 업무안내

가맹점 현황

카드
지역1(시도) ①
지역2(시군구)
상세주소
가맹점명

검색

②

전역별 다운로드

총 233,157건

카드사	가맹점명	주 소	연락처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등록일
BC	(주)에너지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041-568-5189	728667057	625-88-02561	2022.03.17
BC	충청가소상사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포교로 9...	033-372-3464	728662869	410-70-06276	2022.03.17
BC	남동주유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동로 7...	064-752-5149	728673317	210-70-39482	2022.03.17
BC	동원주유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동로 1...	043-732-0540	728673015	352-85-01829	2022.03.17
BC	나라에너지(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안구 사직2동 ...	043-266-0502	724803348	301-81-39329	1999.11.25
BC	동일로석유	경기도 과천시 피주읍 봉서라 43...	031-954-1189	747130111	141-01-16149	2004.11.18
BC	동원주유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용연리 8...	041-355-5500	746734498	311-02-95245	2004.10.08
BC	문화상용(주)	충청북도 진천군 혁신면 신석리 4...	043-537-5151	727992245	301-81-44744	2000.10.16
BC	금하주유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2...	033-642-8948	746645710	226-08-41026	2004.09.24
BC	보성주유소	경상북도 칠곡군 의북면 남계리 6...	054-975-8951	752267578	513-13-60620	2006.03.17

③

1 2 3 4 5 6 7 8 9 10

상세설명

❖ 가맹점 현황 목록 화면

- ①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결과가 아래 목록에 조회됩니다.
- ②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한 목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③ 페이지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QnA 게시판

(0:29:01 루 자동로그아웃) [방송내용: 2014년 11월 14일 (수) 20:00 방송 (id : 00000000, 지역:00000000, 7월 14일 방송분)]

● 위치 : 지자체 업무포털 > QnA 게시판

에너지바우처

(01-29-01 주 자정 프로그램) [주요정보] [문의사항] [FAQ] [공지사항] [자재] [문의사항] [문의사항]

지자체 업무포털

QnA

전통상태	전체
문의구분	전체
작성일자	2022.02.20 ~ 2022.04.21
검색어	제목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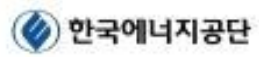
번호	전통상태	문의구분	제목	작성일	작업명
158	접수	카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카드 대리발급 관련		
157	확인완료	신청	비밀글입니다. 답변 : 비밀글입니다.		
156	확인완료	신청	비밀글입니다. 답변 : 비밀글입니다.		

상세설명

❖ QnA 게시판 화면

- ①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결과가 아래 목록에 조회됩니다.
- ② 자주 물어보는 문의별로 FAQ를 분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문의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질문하기를 클릭하여 질의사항을 올리면 에너지복지실에서 답변해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예시)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①

영유아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영유아보육기관 ·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 교사 및 하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허위신고
-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

-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 현금으로 수령) 은닉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
- 타인 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②

연구개발(R&D) 부정수급 유형

-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
-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부풀리기를 통한 허위 정산 서류 제출
- 각종 연구비 목적 외 이용, 사적 이용 등

기타 보조금 · 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 ·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 편취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

